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1-65  
<https://doi.org/10.29212/mh.2024..13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조선 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재임 실태

감병훈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객원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부임 현황
  3.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출신 이력
  4.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상피와 품계
  5. 맺음말

**초 록** 본고는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재임실태를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병사의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연구에 참고한 사료는 주로 『조선왕조실록』이고 이 밖에 각종 읍지의 『선생안』이나 『일기』 등을 이용했다. 연구 범위는 조선 건국부터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1592년까지이다.

조선 전기 하삼도에 부임한 병사의 연인원은 총 395명이다. 이들 중 같은 도에 연달아 근무했던 병사는 31명으로 8%에 불과했는데, 대다수가 공신세력들이었다.

병사의 임기는 24개월이었으나 실제로 평균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그 절반인 12개월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는 병사의 작전 실패, 개인적인 사정과 비리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조선 전기 하삼도를 배출한 가문은 총 52성 120본관이었다. 이 중 2명 이상을 배출한 가문은 30성 55본관이었다. 하삼도 병사를 배출했던 가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와는 달리 병사를 역임한 자들이 부자·형제 등 혈연관계였다.

병사는 외관직이기 때문에 상피제도 중에서 본향상피도 적용받았다. 따라서 병사로 부임한 자들의 연고지와 부임지를 분석해 보면 서울·경기권 출신이 다소 우세했다. 시대별로 보면 15세기에는 본향출신이 좀 더 많이 임명되었으나 16세기에는 감소했다.

병사에 임용될 당시 관품은 종2품의 가선대부가 주를 이루었고 다음으로 3품의 당상관이 임명되었다. 병사에 가장 많이 임명된 연령은 40대, 50대였고 다음으로 60대와 30대였다.

주제어 : 조선 전기, 병마절도사, 하삼도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 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 1. 머리말

조선 시대의 군대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분리되었고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 운용되었다. 육군은 종2품의 품계를 지닌 兵馬節度使가<sup>1)</sup> 설치되어 군대를 節制하고 수군은 정3품의 水軍節度使가 통솔하는 이원체제였다. 육군의 최고 지휘관인 兵使는 營鎮軍체제 때는 배속된 영진군을 지휘하고 군무를 감독하면서 유사시에는 외적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세조대에 오게 되면 진관체제가 확립되면서 병사는 主鎮의 主將이 되었고 그 예하로 巨鎮과 諸鎮의 수령들이 鎮將으로 소속되면서 이들의 군무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되었다. 따라서 병사는 도내의 육군을 움직여 한 지역의 방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하삼도는 양계와는 달리 고려 말부터 시작된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가 속출되는 상황이었다. 조선은 군사제도와 무기체계의 개편, 연해지역의 성곽 구축, 專任의 병사 파견 등을 통해 지방군을 재건하며 왜구에 대응했다. 특히 지방군의 육군은 실질적으로 군현의 방위를 담당하는 군대였기에 때문에 병사의 임무가 막중했다.<sup>2)</sup> 이에 병사의 재임 실태를 상세

1) 병마절도사라는 호칭은 세조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에는 도절제사라고 칭해졌다. 본 고에서는 『經國大典』에 법제화된 명칭인 병마절도사로 통칭하며 이하 병사라 약칭한다.

2) 더불어 병사는 수사를 겸직하거나 수군과 관련된 업무를 종종 수행하기도 했다. 종종 때는 잠시 兵使兼治制가 실시되었다가 폐지되기도 했다. 『태종실록』권9, 태종 5년 2월 24일(경인) ; 『중종실록』권32, 중종 13년 2월 21일(경인) ; 『중종실록』권44, 중종 17년 4월 4일(경진).

히 살펴보는 것은 조선 전기 하삼도 지방의 육군을 관장했던 병마절도사제도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병사와 관련된 기왕의 연구로는 병사제도의 정립 과정,<sup>3)</sup> 각도 병영의 설치와 이설<sup>4)</sup> 등을 중심으로 밝혀져 왔다. 이 중 병마절도사 재임 실태에 관해서 오중록은 『실록』 등의 자료를 통해 조선 초기 8도의 도절제사를 지낸 45명의 부임시기와 출신 및 관직 등을 밝혀냈다.<sup>5)</sup> 그리고 유동호는 조선 후기 하삼도 병사의 재임 실태를 살펴 출신성분과 성관 및 평균 재임 기간을 부록으로 드러내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재임 실태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조선 전기 병사의 명부가 수록된 선생안이 없기에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7)</sup>

병사는 종2품의 상급 무관이기 때문에 관변자료인 『朝鮮王朝實錄』에 그 임명과 부임, 그리고 교체 사유에 대한 기록이 산견

3) 장병인, 「朝鮮初期의 兵馬節度使」, 『韓國學報』 34, 1984 ; 오중록, 「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 上·下」, 『震檀學報』 59·60, 1985.

4) 金淇森·柳承宙·沈允洪, 『全羅兵營史研究-康津兵營城과 하맹滯留址 攷研』, 조선대학교, 1999 ; 안중만, 「조선시대 경상좌병영의 이설논의 검토」,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임선빈, 「조선시대 海美邑城의 축성과 기능변천」, 『역사와 담론』 58, 2011 ; 감병훈, 「조선전기 경상우병영의 설치와 이설」, 『민족문화논총』 79, 2021.

5) 오중록,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2014.

6) 유동호,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부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 조선 후기에 생산된 병마절도사 『선생안』은 경상우도의 『羸營道先生案』이 거의 유일하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 부임한 병사의 정보는 선조시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의 병사제도 운영을 살펴보는 데는 제한이 있다. 『축영도선생안』의 전기 명단은 그 성명과 품계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임명된 병사는 도입과 퇴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 누락된 인물들이 있거나, 임명만 되고 실제로 부임하지 못한 자도 포함되어 있어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시대를 조망하는 병사제도 운영 연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료이다.

되어 있다. 『실록』에는 병사로 임명된 자들의 개인 이력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복무실태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일기』나,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일부 군현의 『읍지』 선생안에 조선 전기의 명단이 남아있다. 선생안에는 이전에 병사의 직임으로 왔거나 병사로 移職했다는 기록이 있어 하삼도 병사의 재임명단을 구성할 때 일부 도움이 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실록』 등을 기본 자료로 삼아 조선 전기<sup>8)</sup> 하삼도 병사의 총 도입인원과 평균 재임 기간, 그들의 과거급제 여부와 문·무의 종류, 성관과 본향, 상피제의 적용, 도입 당시의 품계와 나이 등을 시기와 왕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면 병사제도가 정착된 이후 실제로 원칙이 고수되거나 변동이 발생하는지 규명될 것이다. 더불어, 왕대별로 병사의 임명 등 재임시 특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는 조선 전기 하삼도 지방의 육군을 관장했던 병마절도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부임 현황

### 1) 명단 작성 기준

조선 전기 하삼도에 도입한 병사는 연인원 총 395명으로 이는 필자가 『실록』과 『읍지』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병사의 임명과 부임 기록을 정리한 후, 왕대별과 도별로 정리하여 합한 수치이

8) 본고에서 말하는 조선 전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1592년(선조 25) 4월까지를 말한다.

다. 하지만 『실록』에서 병사의 임명과 遞職에 대한 기록은 일부 누락되었고, 특히 선조 시기의 전반 부분은 내용이 부실하여 병사의 임명과 관련된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읍지』의 선생안도 조선 전기의 내용은 빈약한 측면에 속하며 병사의 『선생안』도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병사의 명단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하삼도 병사 총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병사의 임명 기록으로만 할지, 아니면 실제로 부임지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했던 도입 기록까지 삼을지는 해당 결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병사의 총원과 관련해서 임명과 도입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총 인원을 계산했음을 밝혀둔다.

첫째, 조선시대 유일한 병사의 선생안인 『蠹營道先生案』은 선조대의 병사명단을 작성할 때 그 기준을 임명과 부임을 혼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즉 조선 후기의 인사는 부임을 기준으로 삼았고 조선 전기의 인사는 임명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축영도선생안』이 제작될 때 앞선 병사의 명단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료에서 보이는 임명기록까지 수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축영도선생안』에는 누락되었으나 선조 시대에 실제로 병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자가 다른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현재 조선 시대의 명확한 병사의 『선생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축영도선생안』의 임명 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병사에 임명되었다고 해도 중간에 대간들에 의해 탄핵되어 임명이 철회되고, 또는 당사자가 사직하여 부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시켰다. 사료에서 보이는 병사의 임명을 받기만 하

9) 그 예시로 金時敏은 임명은 받고 부임하지는 못했으나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

고 중도에 퇴임한 자들은 실제 재임한 인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발생한다. 경상우도의 경우 實地로 부임한 병사는 125명인데 반해 경상우도 병사에 임명된 자는 17명이 더 존재했다. 이밖에 경상좌도는 20명, 전라도는 13명, 충청도는 11명으로 총 61명이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한 인원이었다. 즉, 본 연구의 병사 총원은 注擬되어 왕의 受點을 받았지만 사직·철회하거나 또는 대간에 의해 탄핵되어 임명이 취소된 인물은 제외하며 임명이 확실한 경우에만 포함하였다.

둘째,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근거로 한다. 조선 후기의 법전인 『續大典』에서 관찰사의 임기는 拜辭日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며 병사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sup>10)</sup> 또 『大典通編』에는 임명되었으나 肅拜하지 않고 체직된 자는 그 履歷으로 허용치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sup>11)</sup> 그렇기에 임명기록이 없더라도 왕을 만나 辭朝를 행한 내용이 있는 자들은 선별하여 총원에 포함하였다.<sup>12)</sup> 이밖에 조선 전기에 병사로 임명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였던 水使의 역임 慣例가<sup>13)</sup> 『대전통편』에는 법으로 明記되었다.<sup>14)</sup>

따라서 조선 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선생안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병마절도사제도의 실제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임명이 확실시 되는 경우와 도입을 기준으로

10) 『속대전』이전, 외관직, “凡瓜限觀察使都事 以拜辭日始計<節度使營將虞候同>”.

11) 『대전회통』병전, 외관직, “兵水使未肅拜而遞者 勿許履歷”.

12)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사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부임한 적도 있다. 李順蒙·郭連城·黃衡·柳晞年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왕이 직접 사조를 생략하고 곧장 부임지로 발령했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대개 그 지방에 사변이 있거나 방위가 시급할 때 종종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사조를 했어도 實地로 부임하지 못한 경우도 1건이 존재한다. 尹任은 사조까지 마쳤으나 孝惠公主의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 본직이 갈려 도입하지 못했다.

13) 수사의 직임을 거치지 않고 병사의 중임을 맡길 수 없다는 사간원의 의견이 있다. 『명종실록』권8, 명종 3년 7월 26일(기해) ; 또한 수사가 병사로 승진함은 陞職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종실록』권43, 중종 16년 12월 29일(정미).

14) 『대전통편』병전, 외관직, “西北外諸道兵使 以已經水使人備擬”.

삼는 게 총원에 대한 정확한 값에 근접한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

## 2) 임명과 도입

조선 전기 하삼도에 병사로 임명되거나 부임한 병사의 총 연 인원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선 전기 하삼도에 도입한 총 연인원과 재임 수

도명 왕대별	경상 우도 <sup>15)</sup>	경상 좌도	전라도	충청도	합계
태조	5	-	1	3	9
태종	12	8	13	13	46
세종	16	13	12	13	54
문종	2	1	0	0	3
단종	3	4	2	3	12
세조	8	7	8	12	35
예종	2	2	1	2	7
성종	13	12	13	14	52
연산군	3	1	4	2	10
중종	20	17	15	12	64
명종	12	14	15	7	48
선조	24	10	7	4	45
미상	5	0	1	4	10
합계	125	89	92	89	395

출처 : 『조선왕조실록』 등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였으며 다음의 모든 <표>도 같다.

비고1 : 총 인원은 再任[重任·仍任] 인원을 포함한 수이다.

비고2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15) 경상우도 항목에는 경상좌병영이 설치되기 이전과 경상좌·우영이 합병된 시기가 편의상 포함되었다. 이는 경상도 좌영이 폐지되고 우영으로 합속되었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 전기에 하삼도 병사로 재임한 총 연인원은 395명으로 경상우도에는 125명, 경상좌도는 89명, 전라도는 92명, 충청도는 89명이 부임했다. 이 중 선조 시대의 인사는 대부분 누락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3도의 경우도 경상우도와 비슷한 인원이 재직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우선, 각 병영이 정착되고 난 뒤 경상도 병사로 처음 부임한 인물은 崔有璉이 확인된다. 그는 1392년(태조 1) 경상도 병사로 서 왜구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중국인들을 한양으로 解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최유련은 본래 州吏로 鄉吏職을 세습하는 출신이었다는 점이다.<sup>16)</sup> 그러다가 여말선초 때 이성계의 막하에서 활동하며 공을 세우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 개국원종공신으로 임명되었다.<sup>17)</sup> 그의 아들인 崔迤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병사를 지내며 그의 가계는 무관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갔다.<sup>18)</sup> 이후 태조 시기 그의 후임으로 파견되는 경상우도 병사들인 趙狷<sup>19)</sup>, 崔雲海<sup>20)</sup>, 尹邦慶<sup>21)</sup> 등도 개국·원종공신 출신이며 이는 전라도와 충청도도 해당된다.

실록에서 전라도 병사로 처음 확인되는 인물은 金贊吉이다. 그는 병졸 출신으로 신분은 미천했으나 수군에서 군공을 세워 병사를 역임하고 개국원종공신에 봉해진 인물이다.<sup>22)</sup> 김빈길은 1397년(태조 6) 1월 왜구를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는데,<sup>23)</sup> 이전부터 병사로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의 부

16) 『세종실록』권33, 세종 8년 7월 11일(임인).

17) 서병패, 『崔有璉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분석』, 『詳明史學』 10, 2006, 232~233쪽.

18) 주16)과 같음.

19) 『태조실록』권2, 태조 1년 9월 27일(을사).

20) 『태조실록』권2, 태조 1년 10월 9일(정사).

21) 주20)과 같음.

22) 『태종실록』권10, 태종 5년 12월 21일(계미).

23)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1월 28일(신사).

재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라도도 경상도와 같이 개국 초부터 병사가 존재했지만, 사료에서는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김빈길 전임의 병사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충청도는 李承源이 1394년(태조 3) 3월에 임명되었다. 같은 날 경상도 병사로 조견이 최유련의 후임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도 충청도에 두 번째로 부임한 병사가 아닐까 사료된다. 이승원도 건국 이전부터 위화도 회군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이성계의 막하에서 왜구와 전투를 치르며 공훈을 쌓고 개국원종공신에 녹훈된 무장이었다.<sup>24)</sup>

주목할 점은 태조 시대에 병사로 임명된 자들 중 상당수가 개국원종공신<sup>25)</sup>이라는 것이다. 태조의 개국원종공신은 이성계가 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軍官출신들이자 훗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했던 핵심세력이었다.<sup>26)</sup> 이러한 사항은 개국원종공신을 제일 처음 책봉할 때의 교지에서 그 성격이 확인된다.

都評議使司에 교지를 내렸다.···“安州牧使 李承源, 廣州等處兵馬節制使 崔雲海···내가 장수가 되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麾下에 있으면서 힘든 일에 종사하고 적군을 방어하여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공로가 可惜하다. 또 정몽주 등이 國權을 마음대로 부려 臺諫을 몰래 부추겨 禍亂을 부채질하여 장차 내 몸에까지 화를 미치게 하려고 꾀했는데, 이에 항거하는 疏章을 올려 정몽주와 그 黨與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간사한 계획을 瓦解시켜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그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다. 마땅히 모두 ‘原從功臣’이란 칭호를 내려야 할 것이다···

24) 주20)과 같음 ; 『세종실록』권32, 세종 8년 6월 11일(계유).

25) “元從의 본래 뜻은 王이 잡저 때 호종한 인물 중 등극한 후에 擢用한 官員이나 功臣號를 받은 인물을 지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박천식, 「開國原從功臣의 研究」, 『論文集』, 10, 1976, 133~134쪽).

26) 박천식, 「앞의 논문」, 135쪽.

상장군 尹方慶은 그때에 어머니 喪事를 당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 班列에 있지 않았지만, 한때의 연고로 그 옛날의 공로를 버릴 수는 없으니, 공신의 칭호를 또한 위와 같이 하고”<sup>27)</sup>

즉, 개국원종공신의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태조가 出將入相일 때 자신의 휘하에서 무공을 세운 자들을 뜻하고, 둘째 정몽주의 攻駁 때 태조를 끝까지 보필하면서 반박 상소를 올린 자들을 말한다.<sup>28)</sup> 두 기준에서 이승원·최운해는 첫째 기준인 군무와 관련되고 최유련<sup>29)</sup>과 윤방경은 둘째 기준에 부합된다. 이렇게 본다면 개국원종공신은 오랫동안 이성계의 옆에서 군사·정치적인 활동을 같이한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기에 태조는 國初부터 개국원종공신들을 통해 지방 군권을 장악하고 변란에 대비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정종의 치세 때는 병사를 임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태조 말년인 1396년(태조 6) 4월 12일에 도절제사제도가 혁파되었던<sup>30)</sup> 여파로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당시 병영이 폐지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추정되는데 첫째는 정도전에 의해 주도된 지방군의 군사권 통제를 위한 방안이었다.<sup>32)</sup> 둘째

27) 『태조실록』권2, 태조 1년 10월 9일(정사).

28) 두 기준은 뒤이어 이루어진 개국원종공신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이후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을 보면 다른 기준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辛氏が 왕위를 훔쳐 정사가 어지러울 때 백성을 깨우치고 훌륭한 정사를 한 사람, 왕실 제도를 정비한 사람, 태조가 즉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大位에 오르도록 권한 사람 등이다”라고 설명한다(박도식, 「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의 研究」, 『人文學研究』 9, 2005, 187쪽).

29) 최유련은 정몽주 등의 공격으로부터 태조를 비호한 공로로 임명되었음을 그의 공신녹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도식, 「앞의 논문」, 188~189쪽).

30)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5월 21일(임신).

31) 1399년(정종 1) 9월 10일의 기록에 따르면 경상도 병마도절제사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할 것을 보고하여 각도에 騎船軍이 복구되는데 당시 병사의 신원은 알 수가 없었다.

32) 오종록, 「앞의 논문」, 83쪽.

는 당시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를 제대로 금압하지 못했던 병사들의 잘못된 應戰을 통해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왜구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연해지역을 약탈한 후 신속히 그 지역을 벗어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병사가 당도한 뒤에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따라서 왜구가 침략하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병력을 분산시켜 방위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영을 폐지한 것이었다.<sup>33)</sup>

1398년(태조 7) 8월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면서 병영은 복구되었다. 정확한 시기는 단정할 수 없으나 1398년(태조 7) 10월경으로 생각된다.<sup>34)</sup> 태종과 세종대를 거치면서 왕권이 안정되고 병사제도가 안착되기 시작하자 4도에서 병사로 부임하는 인원은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종과 예종은 재위가 각각 3년과 1년밖에 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무려 12명과 7명의 병사가 부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단종은 병사를 대부분 유임하였다. 하지만 계유정난을 전후하여 4도의 병사가 거의 일시에 교체되는데 경상우도에는 金允壽, 경상좌도는 河漢, 전라도는 崔淑孫, 충청도는 成勝 등이다. 당시 세조는 정난을 성공시키고 政局을 안정화하고자 중앙의 관료들을 회유하면서<sup>35)</sup> 지방은 병사들을 통해서 혹시 모를 변란을 대비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충청도 병사는 본래 성

33) 감병훈, 「앞의 논문」, 5~10쪽.

34)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182~183쪽.

35) “단종의 즉위 후 황보인과 김종서의 국정 운영에 대해 集賢殿官 등 중진관료와 대간은 集賢殿直提學 河緯地가 ‘높은 여우[김종서]가 죽으면 내가 다시 관직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관료들과 대간들은 불만과 비판이 팽배하였다. 중진관료와 왕 측근세력의 집정대신과 조정에 대한 불만은 세조로 하여금 . . . 왕 측근 시위군사와 내시들을 지지세력으로 포섭하여 활동하며, 계유정변을 성사시키고 집권하는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고 하겠다. . . . 이들 중진관료는 계유정변 때에는 집정대신의 전횡에 반발에서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침묵하였다”라고 했다(한충희, 『朝鮮 世祖代(1455-1468) 原從功臣研究-1,2等功臣을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22, 2013, 6~7쪽).

승 대신에 池淨이 이미 사배를 마치고 재임지로 내려갔으나 정난이 성공하고 난 뒤 곧바로 金宗瑞의 黨與로 지목되어 귀양을 보냈기 때문이다.<sup>36)</sup> 또 함길도 병사였던 李澄玉은 정난의 사정을 파악하고 난 뒤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sup>37)</sup>

세조는 재위기간 동안 많은 수의 정난·좌익원종공신을 임명했는데 그 수가 3,000여 명에 달한다. 세조원종공신의 경우 등급을 보면 1등과 2등이 80명과 849명이고 3등은 1,744명에 이르렀다. 이 중 1등과 2등은 3등과는 달리 고위 관직자가 집중되어 있고 상전이 우월했다.<sup>38)</sup> 세조가 원종공신을 임명한 배경은 즉위 이후 왕권을 안정시키고 본격적인 치세를 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현직 관료를 대거 포함시켜 단종폐위에 대한 관리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조정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sup>39)</sup> 또 1~2등 세력이 중심이 된 원종공신 350여 명은 세조대 중반부터는 정1~3품의 당상관이 되면서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갔다. 특히 이들은 국왕의 측근에서 시위에 종사한 군사기구를 관장하면서 군사권을 장악한 후 세조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 세력이었다.<sup>40)</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조대에 임명된 병사 중에 金允壽와 河漢은 1455년(세조 1) 12월 좌익원종공신2등으로 책록된 인물이다.<sup>41)</sup> 김윤수는 1451년(문종 1) 6월에 이미 병사에 임명되어

36) 『단종실록』권8, 단종 1년 10월 11일(갑오).

37) 『단종실록』권8, 단종 1년 10월 25일(무신).

38) 최정용, 「세조조 원종공신의 책정과정과 성격」, 『창원사학』 2, 1995, 251~276쪽.

39) “세조의 원종공신의 중심이 된 1등과 2등 세력의 특징은 正功臣을 가족으로 두고 있고, 문과급제자가 다수며, 유력성관 출신에 참상관 이상의 자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원종공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등과는 구별이 있다”고 설명한다(한충희, 「앞의 논문」, 8~14쪽).

40) 한충희, 「앞의 논문」, 22~30쪽.

41) 『세조실록』권2, 세조 1년 12월 27일(무진).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난이 발생하자 다시 세조에 의해 중임이 된 경우였다. 하한은 연달아 경상좌도에서 세 번의 연임을 했다. 이들 외에도 단종 재위기간에 세조에 의해 임명된 병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李允孫, 李宗睦, 俞益明 등도 모두 좌익 원종공신1등이었다.<sup>42)</sup> 따라서 세조대에 병사로 임명된 원종공신 세력은 세조의 즉위나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있던 인물들은 아니었다. 세조는 오히려 이들을 포섭하여 세력으로 삼은 뒤 지방 병권을 맡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종은 즉위 이전 대리청정과 함께 원로대신들과 의논을 통해 정사를 처리하는 院相制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대리청정과 원상제가 결합된 政局은 성종이 친정을 시작하는 시기까지 유지되었다.<sup>43)</sup> 원상은 세조대의 공신부터 성종의 친정까지 권력을 장악한 유력 대신 집단이었다. 이들은 세조대부터 성종대까지 공신 책록을 받은 세력들로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집단이었다.<sup>44)</sup> 또한 예종의 즉위 전후로는 이시애의 난과 남이의 옥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성종의 즉위 이후 좌리공신을 녹훈했기 때문에 기존의 공신세력은 중첩되었다.

예종조에 임명된 병사들 중 許琮, 林自蕃, 李仲英, 崔有臨이 있는데, 허종은 적개공신1등<sup>45)</sup>이고 임자변<sup>46)</sup>과 최유립<sup>47)</sup>은 세조대의 공신이었다. 특히 이종영은 예종과 단독으로 병력을 징발할 수 있는 密符를 하사받은 자로<sup>48)</sup> 예종의 신임을 받는 자였다.

42) 주41)과 같음.

43) 김종필, 「조선시대 국왕권력 이양 사례연구 -선위와 대리청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84쪽.

44) 김원혁, 「조선 성종대 '領敦寧以上'집단의 성립과 정치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9쪽.

45) 『세조실록』권43, 세조 13년 9월 20일(임오).

46) 『단종실록』권9, 단종 1년 11월 4일(병진).

47) 주41)과 같음.

48) 『예종실록』권4, 예종 1년 윤2월 27일(임오).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1476년(성종 7) 1월 이후에도<sup>49)</sup> 공신 세력들이 병사를 계속해서 역임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sup>50)</sup> 공신 세력들이 성종의 친정 이후 병사의 직함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진관체제 아래서도 병사를 임명하는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성종도 선왕들처럼 공신세력을 통해 지방군을 통솔하여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 병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서 인사조치가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인종은 단 1건의 병사도 임명한 기록이 없는데, 치세가 불과 8개월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병사를 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걸로 추측된다.

### 3) 중임

다음으로 병사의 重任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은 지방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병사를 같은 도에 오랫동안 유임 시켜 그들의 私有地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sup>51)</sup> 실제로 <표 1>의 총 연인원 395명 중에서 중임자는 31명으로 비율은 8%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동일 인물이 같은 도에서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 비율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중임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49) 『성종실록』권63, 성종 7년 1월 13일(무오).

50) 具謙·李從生·沈安仁·曹克治·辛壽·安仁厚·朴植·朴居謙·裴孟達·孟碩欽·邊脩·李蓀·尹末孫·李淑琦·卞宗仁·邊靖 등이 모두 공신들이었다. 공신내용은 별표를 참조할 것.

51) 『성종실록』권204, 성종 18년 6월 3일(신미).

〈표 2〉 조선전기 하삼도 병사의 重任횟수

도명 중임	경 상 우 도		경 상 좌 도		전 라 도		충 청 도		합 계
	2 회	朴子安	柳龍生	權蔓	李澄玉	馬天牧	文貴	李龜鐵	
尹子當		禹博							
金允壽		柳洙	鄭種	吳誠	崔淑系	南致勤	李之實	李宗孝	
具謙		河叔傳							
李大伸		蘇滄	張弼武		白惟儉		李允孫	李亨順	
李戩		梁士瑩							
3 회	-		河漢		鄭耕		-		2
4 회	曹備衡		-		-		-		1

비고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하삼도에서 2회 이상 병사를 연임한 자는 28명으로 총 중임자의 90%를 차지하며, 3회 이상은 2명으로 7%를, 4회 이상은 1명으로 3%가 된다. 한 도에서 직무를 연임하더라도 대부분 2번에 그친 반면 3번 이상으로 중임되는 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조처는 한 지방의 군권에 대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여겨진다. 각 도의 감사가 병사의 직함을 겸직했던 이유도 바로 무관의 군사권을 문관인 감사가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에서 병사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인물이 있다는 점은 군권의 사유화에 대한 위험이 있더라도 그들을 유임시켜야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우선, 2번 이상 중임된 자 중에 朴子安이 주목된다. 그는 고려 말 왜구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고 이후 개국원종공신에 임명된 자로 태조대부터 고위 관직을 역임했다. 1397년(태조 6) 1월 경상도에서 왜구에 의해 知蔚州事 李殷의 납치사건이

발생<sup>52)</sup>했다. 박자안은 왜구 토벌에 참여한 적이 있어 동월에 전라도 병사로 임명되었다.<sup>53)</sup> 이때 박자안과 함께 경상도와 충청도 병사로 임명된 인물은 尹邦慶[尹柢]과 趙英茂로 태종의 최측근들이었다. 또, 河崙은 현장 담당자였던 鷄林府尹 柳亮의 후임으로 이미 임명되었는데<sup>54)</sup> 사실은 정도전의 요동 攻伐 때문에 미움을 받아 계림부윤으로 좌천된 것이었다.<sup>55)</sup>

박자안은 2월에 다시 慶尙·全羅 都安撫使로 제수 받고<sup>56)</sup> 경상도로 내려갔으나, 왜인들을 잡는데 실패하고 말았다.<sup>57)</sup> 왜구 진압이 실패하고 난 뒤 간관들은 이은의 사건과 함께 도절제사들의 작전 실패 등을 명분 삼아 사건의 연루자들을 탄핵하기 시작했다.<sup>58)</sup> 5월 18일에는 그도 작전을 그르쳤다는 죄목으로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 이때 아버지의 처형 소식을 접한 朴實<sup>59)</sup>은 당시 靖安公이었던 이방원의 잡저로 달려가 읍소하며 아버지를 구해줄 것을 간청했다. 박자안의 참형은 태조의 명령 아래 비밀리에 추진되었는데 이방원은 이러한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태조를 찾아가 박자안을 구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태조는 예상대로 박자안의 참수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면서 크게 대노했으나 결국은 살려 주었다.<sup>60)</sup>

52)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1월 3일(병진).

53)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1월 28일(신사).

54)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5월 27일(무인).

55) 『浩亭集』권4, 「墓碣銘」, “丁丑正月 鄭道傳議舉兵出疆 忌公 出爲雞林府尹”.

56)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2월 16일(기해).

57)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4월 6일(무자).

58)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4월 12일(갑오).

59) 태종은 세자시절 때 박실을 자신의 휘하라고 말하면서 박자안을 구명한 일을 소회한 적이 있다. 따라서 박실은 태종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다. 『정종실록』권4, 정종 2년 6월 2일(을미).

60)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5월 18일(기사).

주목할 점은 같은 날 왜구 방어에 실패했던 경상도의 군관들에게 杖刑의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sup>61)</sup> 이러한 공박은 당시 태종과 정적이었던 정도전의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 것이라 생각된다. 정도전은 당시 翳陣을 통해 중앙군과 지방군의 군사권을 장악하여 요동 정벌을 단행하고 동시에 종친들의 사병을 통제하려 했다. 이러한 연유로 태종을 비롯한 종친과 2품 이상의 고위 무장들은 정도전의 습진 명령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정도전은 2품의 고위 무관인 병사를 혁파하려고 했다.<sup>62)</sup> 결국 박자안이 참형을 피한 지 불과 3일 후에는 병사제도가 폐지되었다. 박자안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것은 결말이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도전 일파가 이방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박자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sup>63)</sup>

이후 박자안은 1401년(태종 1) 경상도 병사를 제수받았고, 1405년(태종 5)에는 다시 경상도 병사를 역임했다. 이처럼 박자안의 사항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선 초기에 같은 도에서 2번 이상 재임한 병사들은 공신이나 왕의 측근인사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로 柳龍生, 尹子當, 曹備衡, 禹博, 金允壽, 柳洙, 具謙, 河漢, 河叔溥, 鄭種, 馬天牧, 鄭耕, 文貴, 李龜鐵, 柳濕, 李宗孝, 李允孫 등이며 재임자 중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sup>64)</sup>

61)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5월 18일(기사).

62) 주32)과 같음.

63) 박용국, 「太宗代 河崙의 정치적 存在樣態의 變化」, 『남명학연구』 28, 2009, 11~14쪽.

64) 류용생은 개국원종공신, 윤자당은 이숙번의 異父兄이자 좌명공신4등, 조비형은 이숙번의 측근, 구겸은 적개공신3등, 하한은 좌익원종공신2등, 하숙부는 하한의 아들, 정중은 좌익·적개공신3등, 마천목은 좌명공신3등, 정경은 아버지인 鄭地가 회군공신2등, 문귀는 神懿王后 韓氏의 조카로 외척, 이귀철은 개국원종공신, 유습은 태종의 원종공신, 이종효는 좌익원종공신2등, 이운손은 좌익원종공신1등으로 실록에서 그 행적이 확인된다.

병사의 중임은 지방의 군권이 사유화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더라도 실시되었다. 결국 중임의 시행 배경은 왕에게 충성·복종하는 인사들을 지방에 배치한 후 병권을 지휘토록하고 각 도의 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공신세력의 특징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

#### 4) 평균 재임 기간

조선시대 병사의 임기는 1424년(세종 6) 許稠의 건의에 따라 일찍부터 2년<sup>65)</sup>으로 정해졌다. 이후 『경국대전』에 虞候와 評事와 함께 720일이 차면 바꾼다고 명기되었다.<sup>66)</sup> 허조가 2년의 임기를 주장한 이유는 “장수의 직임을 단기간에 교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졸들을 헤아리고 要害處와 적의 형편을 파악하는데 장시간이 걸린다.”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병사의 임기는 제대로 지켜졌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병사의 도입과 퇴임 등 교체의 날짜를 정확히 산출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전기 하삼도에서 재직한 모든 병사의 재임 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한 사료는 없다. 물론 일부 인사들에 대한 과만이나 체직 기록 등이 『실록』에 남아 있어 일부는 정확하게 재임 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재임 기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임 활동이 일부 확인되는 병사들도 결과 값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록』·『읍지』 등의 사료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병사의 재임 기록을 통해서만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조사된 기간을 평균으로 낸 도표이다.

65) 『세종실록』권26, 세종 6년 11월 30일(신축).

66) 『경국대전』 병전, 외관직, “節度使虞候評事 仕滿七百二十”.

〈표 3〉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평균 재임기간

도 명 왕대별	경상우도	경상좌도	전라도	충청도	도임인원	규명인원	평 균
태 조	7개월		미상	7개월	9	4	3.5개월
태 종	68개월		25개월	94개월	52개월	46	23
세 종	130개월	88개월	63개월	107개월	54	27	14개월
문 종	14개월	미상	미상	미상	3	1	14개월
단 종	10개월	미상	6개월	17개월	12	4	8.3개월
세 조	69개월	39개월	75개월	83개월	35	19	14개월
예 종	22개월	13개월	미상	5개월	7	3	13.3개월
성 종	147개월	136개월	121개월	111개월	52	33	15.5개월
연산군	미상	미상	50개월	미상	10	3	16.7개월
중 종	158개월	84개월	131개월	44개월	64	32	13.5개월
명 종	48개월	55개월	92개월	14개월	48	18	11.6개월
선 조	17개월	17개월	25개월	미상	45	6	9.8개월
규명 인원	56	33	45	39	-	173	12개월
평 균	12.3개월	13.8개월	14.6개월	11.3개월	-	-	-

비고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표 3〉을 보면, 태조와 태종대의 평균 재임 기간은 각각 3.5개월과 10개월로 다른 왕대별 평균 기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당시 왜구와의 잦은 전투로 인해 병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두 번째는 태종대까지 병사의 임기가 2년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應變적으로 교대된 것으로 사료된다.

세종대에 병사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면서 평균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세종 시대에 하삼도로 부임한 54명의 병사 중 재임 기간이 확인된 자들은 27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이

14개월이었다. 세종대에 瓜滿이 확인되는 병사는 河敬復, 成奉祖, 朴炯, 李思儉, 李穰, 文貴, 李皎, 辛處康 등이다. 이에 반해 단종의 치세는 평균이 8.3개월로 세종대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세조대에 부임한 병사 35명 중 재임기간이 규명된 자들은 19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이었다. 다시 세종대의 평균 재임 기간 값으로 회복된 것이다. 세조 시대에 임명된 병사 중 瓜遞한 자<sup>67)</sup>들도 있던 반면에 부정을 저질러 推劾되거나 병으로 소환되어 재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자<sup>68)</sup>들도 발생했다.

예종대는 하삼도로 도입한 병사 7명 중 재임 기간이 확인되는 자들은 3명으로 그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3.3개월이었다. 瓜歸한 인물로 李克均이 확인되는데 그는 1469년(예종)에 제수되어 1471년(성종 2)까지 직임을 수행했다.

성종대는 52명의 병사 중에 재임 기간이 규명된 인원은 33명으로 그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5.5개월이었다. 과만한 인사는 朴良信, 朴埴, 李季全, 金瑞衡, 金伯謙, 變處寧, 曹淑沂, 河叔溥, 具謙, 王宗信, 趙益貞 등이다. 이들 중 변처령과 왕종신은 연임되지 않은 채 24개월의 기간을 넘어 각각 34개월과 35개월의 직임을 수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연산군대에 도입한 병사는 10명인데 이 중에서 재임 기간이 확인되는 자는 3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이 16.7개월이었다. 3명 중 과체한 자는 吳純이 확인된다.

중종대에 부임했던 병사는 64명이고 이중에서 규명된 자는 32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3.5개월이다. 중종대 과체한 병사의 명단은 柳聃年, 尹熙平, 吳世翰, 金舜臯, 朴英, 趙舜, 黃琛, 方輪

67) 李好誠, 洪興祚, 李仲英, 李昇平, 李士平 등이 확인된다.

68) 『세조실록』권24, 세조 7년 4월 9일(기묘) ; 『세조실록』권29, 세조 8년 9월 24일(을묘) ; 『세조실록』권37, 세조 11년 12월 19일(임진).

등이 확인된다. 이중 유담년은 三浦倭亂 발생 이후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임금에게 사조하지 않고<sup>69)</sup> 그대로 부임한 경우였다.

명종대에 하삼도 병사를 역임한 인물은 총 48명이며, 이 중 18명이 규명되었고 평균 재임 기간은 11.6개월이었다. 과만한 병사로는 金胤宗, 尹先智, 南致勤 등이 확인된다.

선조대는 45명의 병사가 도입했는데, 기록의 부재로 6명의 재임 기간만을 규명할 수 있었다. 평균 재임 기간은 선대왕들보다 적은 9.8개월의 수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까지 선조는 25년간 재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병사가 도입된 걸로 추정되나 기록이 소실되어 더 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도별로 살펴보면 경상우도의 병사 중 규명된 자는 56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2.3개월이었다. 경상좌도에서 규명된 자는 33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3.8개월이었다. 전라도는 45명의 재임 기간이 규명되었고 평균 재임 기간은 14.6개월이었다. 충청도는 39명이 규명되었고 평균 재임 기간이 11.3개월이었다. 4도의 평균 재임 기간을 종합하면 24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표 3>에서 확인되는 병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12개월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병사의 임기는 대체로 잘 지켜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사가 적과의 교전에 패배하여 파직되거나 스스로 법을 어기고 비리를 자행하여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나이가 많고 덕망이 없어 병사의 직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되는 일도 잦았다. 그렇기에 평균적으로는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sup>70)</sup>

69)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6월 15일(기해).

70) 교체 사유를 분석하는 것도 재임 실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후일의 연구에서 논변하도록 하겠다.

### 3.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출신 이력

#### 1) 성관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를 역임한 395명 중에 중임자 31명을 제외하면 364명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성관이 밝혀진 자는 326명이며 불명인자는 38명으로 성관의 규명 비율은 약 90%에 달한다.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들은 총 52성 120본관에서 나왔으며, 여기에서 2명 이상을 배출한 가문은 30성 55본관으로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성관

성 관	인 원	성 관	인 원	성 관	인 원
全州李氏	11	溫陽方氏	3	靑松沈氏	2
昌寧成氏	10	順興安氏	3	海州吳氏	2
安東權氏	7	寶城吳氏	3	漆原尹氏	2
昌寧曹氏	6	丹陽禹氏	3	固城李氏	2
南陽洪氏	6	廣州李氏	3	德水李氏	2
光山金氏	5	晉陽河氏	3	新平李氏	2
密陽朴氏	5	河陽許氏	3	永川李氏	2
原州邊氏	5	長水李氏	3	龍仁李氏	2
靈山辛氏	5	綾城具氏	2	羽溪李氏	2
順天金氏	4	江陵金氏	2	咸平李氏	2
咸陽朴氏	4	善山金氏	2	羅州林氏	2
平山申氏	4	水原金氏	2	平澤林氏	2
原州元氏	4	延安金氏	2	迎日鄭氏	2
坡平尹氏	4	義城金氏	2	江陵崔氏	2
全義李氏	4	晉州柳氏	2	水原崔氏	2

성 관	인 원	성 관	인 원	성 관	인 원
漢陽趙氏	4	南平文氏	2	通川崔氏	2
淸州韓氏	4	驪興閔氏	2	昌原黃氏	2
安東金氏	3	草溪卞氏	2	-	-
文化柳氏	3	寧越辛氏	2	-	-

비고1 : 1명씩만을 배출한 가문은 <표 4>에서 제외하였다.

비고2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은 전주이씨로 11명이었고, 뒤를 이어 창녕성씨가 10명, 안동권씨가 7명, 창녕조씨·남양홍씨가 6명, 광산김씨·밀양박씨·원주변씨·영산신씨가 각 5명씩을 산출했다. 순천김씨·함양박씨·평산신씨·원주원씨·파평윤씨·전의이씨·한양조씨·청주한씨도 각각 4명씩을 배출하며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유력가문들이 되었다.

가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11명이나 병사를 배출한 전주이씨는 대다수가 종친들이었다. 李興發은 完豐大君 李元桂의 손자고, 李皎·李澄·李穰은 義安大君 李和의 아들 및 손자다. 李復·李衡·李衍은 정종의 손자이며, 李徠는 효령대군의 손자였다.

이렇게 종친들이 병사로 임명된 이유는 무엇일까. 태조 이성계는 이복형제와 그 아들을 비롯한 일가 종친들의 군사력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조선을 건국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기에 태조는 前朝부터 계승해왔던 ‘宗親不任以事’의 원칙을 깨고 종친들의 관직진출을 허용하였다.<sup>71)</sup> 하지만 종친의 사환과 사병은 왕권 강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종 때 잠시 금지되었다. 1402년(태종 2) 조사의가 난을 일으키자 오히려 태종은 왕권 강화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

71) 최이돈, 「조선초기 왕실 친족의 신분적 성격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진단학회』 117, 2013, 28~30쪽.

해 다시 종친들의 사환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성종초기까지 유지<sup>72)</sup>되다가 『경국대전』이 반포된 뒤 종친의 사환을 제한하고부터는 종친으로서 병사에 임명된 자<sup>73)</sup>는 없었다. 전주이씨에서 병사를 많이 배출한 이유는 이러한 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10명의 병사를 배출한 창녕성씨의 경우 창녕부원군 成石璘의 일가<sup>74)</sup>가 대부분이었다.

하삼도 병사를 2명 이상 배출한 가문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전주이씨·창녕성씨 두 가문처럼 병사들끼리 親族 등의 혈연관계로 얽혀있다는 것이다. 즉 부자나 형제의 관계인 자들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병사를 역임한다는 사실이 많았다.

먼저 三代가 병사를 지낸 경우 진양하씨의 하경복·하한·하숙부가 병사를 역임했다. 부자관계로는 순천김씨의 김승주와 金有讓, 밀양박씨의 朴麟壽와 朴晉, 함양박씨의 박자안과 박실, 온양방씨의 방윤과 方好義·方好智, 영산신씨의 辛悅과 신처강, 광평이씨의 李好誠과 李居仁, 나주임씨의 林鵬과 林晉, 창녕조씨의 조숙기와 曹潤孫, 한양조씨의 曹秀文과 趙繼宗, 강릉최씨의 최유련과 최이, 창원황씨의 黃衡과 황침의 가문이 있다. 형제관계로는 파평윤씨의 尹坤과 尹尙, 신평이씨의 이종효와 이종목, 장수이씨의 李昇平과 李士平, 양산이씨의 李澄石과 인천이씨의 李澄玉<sup>75)</sup>이 있다. 이밖에 통천최씨의 최운해와 최숙손은 조부관계였다.

조선 전기의 특징은 조선 후기 하삼도 병사를 역임한 성관 분

72) 김지연, 「朝鮮初期 宗親 仕宦의 推移」, 『서울과 역사』 75, 2010, 64~93쪽.

73) 1578년(선조 11) 이후 부임한 李頤壽는 정종의 高孫이므로 선조와는 촌수가 멀다.

74) 성석린의 일가는 다음과 같다. 成發道는 성석린의 아들, 成達生은 성석린의 조카, 成勝은 성달생의 아들, 成貴達의 고조부가 성석린이고, 成世貞은 성귀달의 아들이다. 성봉조는 성석린의 姪孫이고 成倣은 성봉조의 조카이며, 成秀才는 성봉조의 증손이다.

75) 이징옥은 본래 양산이씨였으나 계유정난 이후 후손들이 인천이씨로 환원했다. 양산이씨는 본래 인천이씨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다.

포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 하삼도 병사를 배출한 가문은 후대로 갈수록 특정 성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전주이씨·전의를씨·평산신씨·덕수이씨·능성구씨·영일정씨·안동김씨 등이 그러했다. 이는 노론의 일당 전체가 격화되고 세도정치가 심화되면서 세습된 결과였다.<sup>76)</sup>

반면에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를 산출시켰던 가문은 특정 성관에서 세습되기보다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거된 가문들 다수는 바로 앞서 설명했던 공신세력이라는 점이다. 즉, 조선 초기부터 군사·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공을 세워 공신 등에 임명되면서 무신으로 현달한 가문이었다.<sup>77)</sup>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왕과 밀접한 자들을 병사로 임명하여 이들을 통해 지방의 군권을 통솔하여 관리한 것이다. 측근 인사의 병사 임명은 변란을 사전에 대비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 2) 과거출신

병사는 종2품의 고급 무관인 동시에 사변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군대를 동원하여 적과 교전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었다. 따라서 병사는 반드시 무재를 갖추어야 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무과였다. 당시의 무과는 무술뿐

76) 유동호, 「앞의 논문」, 192~195p.

77) 이밖에 병사의 率眷赴任이 부자끼리 병사로 임명되는 데에 일부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삼도로 부임하는 병사는 임지로 내려갈 적에 가족을 거느리고 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 당시 전라병사 元續이 敗死할 때 그의 아들도 같이 싸우다 죽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아버지가 병사로 활동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담당고을을 순회하며 간접적으로 병사의 직무를 체험했던 것이다. 『성종실록』권148, 성종 13년 11월 6일(경자) ; 『명종실록』권18, 명종 10년 5월 23일(병진).

아니라 지략을 확인할 수 있는 병서와 『경국대전』 등을 같이 보았기 때문에 병사의 천망은 무과에 등과한 자를 먼저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다.<sup>78)</sup> 또 1434년(세종 16)부터는 『武才錄』에 등록된 무인들 중에서 장수가 될 만한 자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sup>79)</sup>

따라서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로 임명된 자들의 무과급제 여부는 병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삼도 병사를 역임한 자들의 과거 출신 성분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하삼도 병사의 출신성분

출신 왕대별	문과		무과		음관		미상		합계
	도입	비율	도입	비율	도입	비율	도입	비율	
태조	1	11%	0	0%	2	22%	6	67%	9
태종	3	6.5%	4	8.7%	10	21.8%	29	63%	46
세종	0	0%	16	29.6%	17	31.5%	21	38.9%	54
문종	0	0%	3	100%	0	0%	0	0%	3
단종	0	0%	3	25%	1	8.3%	8	66.7%	12
세조	1	2.9%	14	40%	11	31.4%	9	25.7%	35
예종	2	28.6%	1	14.3%	1	14.3%	3	42.8%	7
성종	5	9.6%	22	42.3%	4	7.7%	21	40.4%	52
연산군	1	10%	5	50%	1	10%	3	30%	10
중종	9	14%	36	56.3%	0	0%	19	29.7%	64
명종	1	2%	26	52%	5	10%	16	36%	48
선조	5	11.1%	23	54.2%	4	8.3%	13	27.1%	45
미상	2	20%	2	20%	2	20%	4	40%	10
합계	30	7.6%	155	39.2%	58	14.7%	152	38.5%	395

비고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78) 『세종실록』권117, 세종 29년 9월 4일(계사).

79) 『세종실록』권66, 세종 16년 12월 2일(을사).

출신성분이 확인되는 하삼도 병사는 395명 중에 243명으로 전체 비율은 약 62%이다. 출신성분이 불명인 자들은 152명으로 약 38%인데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과합격자는 30명인 7.6%이고, 무과합격자는 155명인 39.2%였다. 음관은 58명인 14.7%이며, 미상은 152명인 38.5%였다. 무과 합격자 비율이 약 40%이기 때문에 병사의 임용 원칙이 비교적 준수되었다고 보여진다. 또 미상자 중에 무과합격자가 있을 수도 있어 해당 수치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의 『武科榜目』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sup>80)</sup>

한편 문과 출신자를 기용한 이유는 안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고 담당 고을의 백성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이다.<sup>81)</sup> 더불어 관할 수령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문신의 경력도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문과 출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개 무재가 있다고 평가된 자들로 임명했음을 알 수 있는데 조견, 이극균, 이내, 허종, 조숙기, 성세정, 李蓀, 金克成, 柳塤, 洪淵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남방에 오랫동안 외침 등의 소란이 없거나, 방어가 긴요하지 않을 시기에는 문신들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는 문신들이 평소에 습진이나 점고 등의 사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82)</sup>

다음으로 시기별 특징을 보면, 태조대는 무과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무과합격자는 없다. 유일한 과거 출신자인 趙狷은 고려 때 문과 출신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6인은 앞서 살펴보았던 이성계의 휘하에서 활약했던 개국원종공신 집단이었

80) 정해은, 「조선시대 武科榜目の 현황과 사료적 특성」, 『군사』 47호, 2002, 264쪽.

81) 오종록, 『앞의 책』, 148쪽.

82) 『성종실록』권204, 성종 18년 6월 3일(신미) ; 『연산군일기』권38, 연산 6년 6월 3일(을유).

다. 따라서 병사는 국초부터 왕의 신임을 얻은 자들 중 실전 경험이 풍부한 무신들을 위주로 기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병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왜구의 침략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시대상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인사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과가 실시된 태종대부터 무과합격자들이 병사에 임용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병사에 오른 자는 조비형으로 1411년(태종 11)에 임명되었다. 그는 1402년(태종 2)에 무과에 합격했는데 登科한 지 불과 9년 만인 35세의 나이로 종2품의 병사직함에 오른 것이다.<sup>83)</sup> 조비형이 무재가 뛰어난 점도 있겠으나, 공신세력인 이숙번의 최측근 인사였다는 점에서 태종의 의도에 따라 임명되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태종은 인사권을 장악한 정종대부터 공신세력을 요직에 등용하여 정권의 안정을 꾀했기 때문이다.<sup>84)</sup>

이와 함께 음사로 진출한 자들의 신분은 대체로 공신들<sup>85)</sup>로 이들을 통해 지방의 변란을 방지하고 군권을 장악하려 한 태종의 정치적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태종 시기 미상 자들도 태조대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무반수령을 지내거나 무관직을 역임한<sup>86)</sup> 무신들이었다.

세종대에 오게 되면 무과 합격자의 비율이 30%로 증가하는데, 무과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3) 조비형과 함께 무과에 합격한 성달생은 6년이 지난 41세 때인 1417년(태종 17)에 병사에 처음 임명되고, 李恪은 그보다 12년이 늦은 49세 때인 1423년(세종 5)에 임명되었다. 『태종실록』권34, 태종 17년 12월 3일(갑신) ; 『세종실록』권19, 세종 5년 1월 25일(정미).

84) 김윤주,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 『韓國史學報』 35, 2009, 169~175쪽.

85) 박자안·辛有定·유용생은 개국원종공신, 洪愨·馬天牧·윤자당은 좌명공신4등, 柳暹은 태종 때 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86) 태종 시기 병사를 역임한 박자안·유용생·강사덕·조비형·李都芬·마천목·鄭耕·李之實·李承幹·崔沔·金尙旅·金重寶 등에서 무반직의 경력이 확인된다.

다만 음관의 비율도 31.5%에 달할 만큼 상당한데 이들의 신분을 보면 종친 또는 부마거나 태종대의 공신들이었다. 세종도 태종처럼 이들을 통해<sup>87)</sup> 지방의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신이 불명한 22명도 이전부터 무관직을 수행한 무반들이었다.

세조 시기에는 무과 합격자가 거의 절반에 접근할 만큼 증가되며 동시에 미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신에 음관의 비율이 31.4%로 늘어나는데 이들은 주로 세조의 공신들<sup>88)</sup>이었다. 세조도 선왕처럼 신임하는 인사를 지방에 파견하여 안정적으로 병권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성종대 이후부터는 문신들의 임명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사실은 같은 시기 음관의 비율이 10% 이내로 감소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또한 성종대부터 선조대까지 무과합격자들의 비율을 보면 성종대는 42.3%, 연산군대는 50%, 중종대는 56.3%, 명종대는 52%, 선조대는 54.2%였다. 이는 조선 전기에 병사의 임명 조건에서 무재를 우선하는 기준이 준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7) “세종도 능력만 있다면 왕자는 물론 종친이나 부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종친 사환에 대한 세종의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김지연, 「앞의 논문」, 75~79쪽).

88) 柳誅는 정난공신2등·좌리공신4등, 具文信은 좌리공신4등, 이승평·이사평·尹欽은 좌익원종공신2등이다.

## 4.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상피와 품계

### 1) 본향상피

병사는 한 지방의 육군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피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받았다. 병사와 상피되는 관직은 병권을 총괄하는 병조판서<sup>89)</sup>가 있고 지방 병권을 같이 겸했던 관찰사나 예하의 수령·첨사·만호 등과도 반드시 상피<sup>90)</sup>되었다. 나아가 임시로 한 도에 파견되어 군사 활동을 펼쳤던 도체찰사<sup>91)</sup>도 상피되었다. 이러한 상피제는 대개 親族相避를 준용한 것으로 혹시 모를 친족 간의 유대를 통한 반란을 방지한 점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병사는 외관직이었기 때문에 本鄉相避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향상피는 외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墳墓之地와 농장이 있는 생활 근거지의 관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다. 고려 때는 향리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어 상피제도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sup>92)</sup>이 되었다.

조선 전기 하삼도에 부임한 병사들의 연고지<sup>93)</sup>와 부임지를 살펴보면 본향상피가 준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삼도에 도입한 병사 395명 중 연고지가 확인되는 자들은 248명으로

89) 『성종실록』권155, 성종 14년 6월 16일(정축).

90) 『속대전』이전, 상피, “觀察使節度使守令僉使萬戶 竝交代相避”.

91) 『성종실록』권130, 성종 12년 6월 11일(갑인).

92) 이기명, 「조선시대 관찰사의 본향상피 재검토」, 『역사와 교육』 17, 2013 10~11쪽.

93) 본고에서 말하는 연고지는 고향이나 묘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약 63%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연고지와 부임지

연고지 부임지	서울·경기		경상우도		경상좌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15C	16C	15C	16C	15C	16C	15C	16C	15C	16C	15C	16C
경상우도	14	23	17	1	2	4	1	1	3	5	1	3
경상좌도	12	15	9	4	9	2	0	0	0	2	0	0
전라도	23	12	5	0	4	0	11	3	0	3	2	3
충청도	26	8	2	2	2	0	2	0	6	4	1	1
합계	75	58	33	7	17	6	14	4	9	14	4	7

비고 : 인원예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울·경기 출신이 34%이고, 지방출신은 29%이다. 출신지가 확인되지 않는 147명인 37%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서울·경기권이 약간 우세한 비율이다.

<표 6>에서 확인되는 본향상피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경상우도에 부임한 병사들은 38명인데 이 중 서울·경기 출신이 14명, 경상우도 출신이 17명으로 동향출신이 우세했다. 하지만 16세기부터는 상황이 역전되어 경상우도 출신자가 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경상좌도의 경우 15세기는 9명이었다가 16세기는 2명으로 줄었다. 전라도는 15세기에 11명이었다가 16세기는 3명으로, 충청도는 15세기에 6명이었다가 16세기는 4명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15세기는 대체적으로 본향상피가 그렇게 준용되지 않았고 16세기는 어느 정도 작용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세기 동안 상피제 적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16세기부터 하삼도 병사 출생지는 서울·경기권

의 비율이 동향 출신자보다 지속적으로 우세하다. 이는 비단 병사뿐 아니라 다른 외관직인 감사나 지방 수령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sup>94)</sup> 감사나 지방 수령직은 후대로 갈수록 서울·경기 출신으로 세력을 이루었던 京華子弟들에 의해 점유<sup>95)</sup>되어 갔다. 그렇기에 종2품의 고위 무관직인 병사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본향 출신의 임명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품계와 연령

병사의 전신이 되는 도절제사는 이미 고려 말부터 都評議事와 대간으로 하여금 위엄과 덕이 일찍부터 드러난 자를 천거하도록 되어 있었다.<sup>96)</sup> 이러한 사항은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그대로 준수되어 兩府, 즉 2품 이상의 대신들을 도절제사로 파견하고 있었다.<sup>97)</sup> 병사를 천거할 때 2품 이상만을 제수한다는 준칙은 예종대까지 준거되었다.

1476년(성종 7) 12월부터는 당상관도 천거할 수 있도록 변경<sup>98)</sup>되면서 절충장군이나 통정대부의 품계를 가진 자들이 병사에 임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3품의 품계를 가진 자들이 임명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때의 변화는 이전의 전례를 법적으로 수용한 조치였다.<sup>99)</sup>

94) 이동희, 「19세기 전반 수령의 임용실태」, 『전북사학』 11·12, 1989, 222~229쪽.; 김양수·김양식, 「조선후기 忠淸監司와 淸州守司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한국사연구회』 125, 2004, 165~166쪽.

95) 이동희, 「조선후기 전라도관찰사 임용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 2020, 52쪽.

96) 『고려사절요』권34, 공양왕 1년 12월.

97) 『태종실록』권2, 태종 1년 11월 7일(신묘); 『세종실록』권24, 세종 6년 6월 23일(병인).

98) 『성종실록』권74, 성종 7년 12월 20일(기축).

99) 1476년 이전 절충장군의 품계를 가진 상태에서 병사에 임명된 사례는 2건이 확인되는데 1472년(성종 3)에 부임한 朴良信은 당시 절충장군이었고 가선대부는 1475년

특히 품계는 같은 도에서 군권을 겸직하던 감사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감사는 한 도의 지방을 통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병사와 같은 관품이었다. 이에 병사는 군무와 관련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멋대로 고을을 출입하는 폐단이 국초부터 발생했다. 따라서 조정은 감사가 병사의 임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위계를 정해 주기도 했다.<sup>100)</sup> 또한 같은 도에서 수사와의 位次 문제에 있어서도 품계가 그 기준이 되기도 했다.<sup>101)</sup>

병사는 적변이 발생하면 직접 군대를 지휘해야 했기에 스스로 무예를 수련해야 했다. 평시에는 담당 지역의 방위를 책임지며 예하 고을의 진법과 군사훈련을 감독했다. 또 도내에 반란이나 도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를 진압하도록 되어 있어 체격과 경륜을 갖추어야 했다. 이처럼 체력과 연령은 병사의 중요한 임명 기준인데 다음의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우승지 洪興이 아뢰기를, “...그리고 전라도 절도사 朴星孫은 나이가 70이 넘었으므로 기력이 쇠약하여 고달프고 정신이 흐리어 便所에 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니, 적을 짐작해 보아 기발한 꾀를 내지도 못할 것이고 자신이 사졸들의 앞장을 서지도 못할 것이고 要害地를 보존하여 국경을 든든히 하지도 못할 것이 분명하니, 청컨대 그의 소임을 바꾸도록 하소

---

(성종 6) 加資되었다. 李從生도 1475년(성종 6) 병사에 임명되었을 당시에는 절충장군의 품계를 가진 상태였으며 가선대부는 1485년(성종 16)에 가자되었다. 이밖에도 1466년(세조 12)에 임명된 이복은 1468년(예종 원년)에 가서야 가선대부로 승진되었고, 1469년(예종 1)에 취임한 이극균은 1472년(성종 3)에 가선대부로 승직했으며, 1471년(성종 2)에 제수된 하숙부도 1473년(성종 4)에 가선대부로 승차했기 때문에 이들도 병사로 천거 받았을 당시에는 3품 당상관이 유력시된다고 볼 수 있다.

100) 『세종실록』권22, 세종 5년 11월 9일(병술).

101) 『중종실록』권24, 중종 11년 2월 24일(을해).

서.”하고, 도승지 한韓健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경상도병마절도사 李欽石은 오랜 병이 한층 더해 약과 음식과 미음이나 죽으로 겨우 몸을 보존한다니, 변에 대응하고 도적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소임을 그만두게 하기를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우승지의 말이 옳다.…이제 이미 늙기는 하였지만 과연 부축하여야 다니게 된다면 變將의 소임에 맞지 않겠다. 그러나 장수를 進退함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박성손과 이흠석이 변장에 합당한지 않은지를 속히 이조와 병조에 물어보는 것이 가하다.”하였다.<sup>102)</sup>

위의 기록에 인용된 것처럼 병사는 직접 말을 몰고 앞장서 군대를 지휘해야 했으므로 너무 연로해서도 안 되며,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하삼도 병사로 임명을 받았더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 노쇠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부임하지 못하는 사례<sup>103)</sup>가 발생했다. 다음 <표 7>은 하삼도 병사에 임명될 당시의 품계와 연령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102) 『성종실록』권234, 성종 20년 11월 18일(임신).

103) 대표적인 기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권4, 세종 1년 5월 7일(신해) ; 『성종실록』권266, 성종 23년 6월 19일(무오) ; 『중종실록』권1 중종 1년 10월 19일(갑자) ; 『중종실록』권11 중종 5년 6월 6일(경인) ; 『중종실록』권23 중종 10년 12월 11일(계해) ; 『중종실록』권99 중종 37년 11월 22일(무진).

〈표 7〉 하삼도 병사의 임용시 품계와 연령

도명	도임인원	품 계	규 명 인 원	연 령	규 명 인 원
경상우도	125	資憲大夫	2	30대	5
		嘉靖大夫	2	40대	16
		嘉善大夫	25	50대	13
		通政大夫	0	60대	10
		折衝將軍	12	70대	1
		합 계	41	합 계	45
경상좌도	89	資憲大夫	1	30대	4
		嘉靖大夫	1	40대	10
		嘉善大夫	14	50대	12
		通政大夫	1	60대	4
		折衝將軍	3	70대	0
		합 계	20	합 계	30
전라도	92	崇政大夫	1	30대	4
		資憲大夫	2		
		嘉靖大夫	2	40대	12
		嘉善大夫	24	50대	15
		通政大夫	1	60대	6
		折衝將軍	3	70대	0
		합 계	33	합 계	37
충청도	89	正憲大夫	1	30대	3
		資憲大夫	1		
		嘉靖大夫	1	40대	9
		嘉善大夫	9	50대	9
		通政大夫	1	60대	7
		折衝將軍	3	70대	0
		합 계	16	합 계	28

비고 : 인원내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병사 총원 395명 중 품계는 110명(28%), 연령은 140명(35%)만이 확인되었다. 경상우도에서 품계가 확인되는 41명의 병사 중 가선대부는 61%이고, 경상좌도에서 가선대부의 비율은 70%이다. 전라도는 가선대부가 75%이고, 충청도는 가선대부가 60%이다. 결과를 통해서 보면 품계는 종2품인 가선대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는 품계의 원칙이 잘 고수되었다고 판단된다.

가선대부 다음으로 많은 품계는 3품의 당상관인 통정대부와 절충장군이였다. 절충장군으로 경상우도 병사에 임명된 자들은 13명으로 약 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좌도는 4명의 3품 당상관들이 부임하여 20%의 비율이였다. 전라도는 4명이 파견되어 12.5%를 차지하고 충청도는 4명이 도입하여 약 27%의 비율을 이루었다. 3품 당상관으로 임용된 자들은 대개 1476년(성종 7) 이후 임명되었다.

가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가진 이들은 총 13명이였다. 전체 비율로는 약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체로 병사는 종2품 하계의 가선대부가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단, 가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들에게서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음식로 가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가진 채 병사를 지낸 자들은 高官大爵의 자제<sup>104)</sup>들이라는 점이다. 둘째, 세조대에는 문신과 무신을 막론하고 세조의 공신세력<sup>105)</sup>이라는 점이다.

연령은 40대와 50대에 많이 분포되었다. 경상우도에서 40대는 16명으로 전체 비율의 35.5%를 차지하였다. 50대는 13명으

104) 黃致身[정헌대부]은 황희의 아들이고, 權學[자헌대부]은 권근의 손자이다.

105) 가정대부는 윤흡이 좌익원종공신1등, 이종생은 적개공신2등·좌익원종공신2등, 자헌대부는 강근이 정난공신3등, 박거겸은 좌리공신4등·좌익원종공신2등, 이숙기는 적개공신1등·좌리공신4등·좌익원종공신2등, 임자번은 정난공신3등, 허형손은 좌익원종공신2등이며, 승정대부는 허종이 정난공신3등이다.

로 약 29%를 점유했는데 40·50대를 합치면 64.5%가 된다. 경상좌도에서 40대는 10명으로 33%이고 50대는 12명으로 40%인데 더하면 73%가 된다. 전라도에서 40대는 12명으로 32%이고 50대는 40.5%를 차지하는데 합치면 72.5%이다. 충청도에서 40대와 50대는 각각 9명으로 도합 64%의 비율이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로 재임하는 자들의 평균연령은 경륜을 갖추 수 있는 40대와 50대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경상우도의 경우 10명이 부임하여 22%였다. 경상좌도는 4명으로 13%이며, 전라도는 6명으로 16%였고, 충청도는 7명으로 25%였다. 또 70대는 경상우도에서 1명<sup>106)</sup>만 임명되었기에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가 65살이 지난 사람은 지방의 벼슬자리에 임명하지 않지만 당상관은 여기에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sup>107)</sup> 하지만 위의 사례에 따라 60·70대의 인물들은 병사로 천거받는 데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것 같다.<sup>108)</sup>

106) 70대에 임명된 자는 曹大坤이 유일하다. 그의 나이를 추정할 있는 단서는 1588년(선조 21) 11월 8일 鄭彥信의 상소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70이 되었기 때문에 만포진 첨사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체직되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 11월 8일(정사).

107)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 “年過六十五歲者 勿外敍 堂上官及未挈家者 不在此限”.

108) 다만 조대곤의 경우 73세 때인 1591년(선조 24) 경상우병사로 활동하다가 임진왜란 발발 직후에 金誠一의 후임으로 仍任된 사례가 있다.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29일(정사).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 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재임실태를 『실록』 등을 사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연인원은 총 395명으로 경상우도는 125명, 경상좌도는 89명, 전라도는 92명, 충청도는 89명이었다. 조선 전기 때는 왕의 신임을 받는 중친·공신세력들도 병사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지방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삼도에서 병사를 중임했던 자들은 31명으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이렇게 본다면 동일인이 같은 도에 2번 이상 재임하는 정책은 장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31명의 중임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대개 공신세력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지방 군권의 사유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인사들, 즉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 지방군을 통솔하고 유사시에 있을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병사의 임기는 24개월인데 실제로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부임했던 395명 중 임기가 확인되는 병사는 172명이다.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24개월의 절반인 12개월에 불과했다.

하삼도에서 병사를 배출했던 성관은 총 52성 120본관이다. 이 중에서 2명 이상을 배출했던 가문은 30성 55본관이었다. 특히 전주이씨는 11명, 창녕성씨는 10명을 배출했다. 조선 전기에 병사를 2명 이상 배출한 가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병사를 지낸 자

들이 혈연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신세력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다.

병사의 출신이 규명된 243명 중에 문과는 30명으로 7.6%이었다. 이에 반해 무과는 155명으로 39.2%이고, 음사는 14.7%이며, 미상은 38.5%였다. 무과 출신자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비교적 무과 출신자를 우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삼도 병사는 외관직이기 때문에 본향상피도 적용받았을 것이다. 조선전기 하삼도 병사로 부임한 인사들 중에 연고지와 부임지가 규명된 인원은 248명으로 63%였다. 대체적으로 서울·경기권 출신 인사들이 좀 더 임명되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동향출신이 서울·경기권보다 다소 우세한 상황이었으나 16세기부터는 역전되었다. 그 이유로 감사나 수령직이 경화자제들에게 점차 점유된 현상처럼 병사도 여기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사는 종2품의 품계를 가진 외관직이다. 품계를 검토해 본 결과 병사의 관품은 가선대부에 집중되었기에 원칙이 준수되고 있었다. 또 병사는 임전 활동이 우선시 되었기에 경륜과 체력을 갖춘 40~50대가 주로 임명되었다.

〈별표〉 조선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 명단<sup>109)</sup>

1. 경상도<sup>110)</sup>

순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	崔有鍾 (미상)	1392.11.9㉔~	항리	미상	강릉	강릉	崔迪 父 개국원종
2	趙狷 (1351~1425)	1394.3.5㉔~	고려 문과	미상	평양	경기 광주	개국공신 2
3	金承霍 (1354~1424)	1395㉔~	음서	미상	순천	여수	좌명공신 4 金有讓 父
4	崔雲海 (1347~1404)	1396.10.23㉔~1397.1.28㉔	음서	미상	통천	창원	회군공신 3 개국원종 崔淑孫 祖父
5	尹邦慶 (?~1412)	1397.1.28㉔~5.27㉔	미상	미상	철원	함안	개국원종 좌명공신 3
1397년 5월 21일		도절제사제도가 폐지					
1398년 9월		9월 26일 이전에 복설					
6	朴子安 (?~1408)	1401.12.18㉔~1402.10.6㉔	미상	미상	함양	함양	朴實 父
7	柳龍生 (?~1434)	1404.3.13㉔~6.5㉔	음서	미상	진주	미상	개국원종
8	朴子安 (?~1408)	1405.2.24㉔~7.22㉔	미상	미상	함양	함양	水使겸직
9	柳龍生	1405.11.23㉔~1406.10.5㉔	음서	미상	진주	미상	水使겸직
10	姜思德 (?~1410)	1407.3.3㉔~8.11㉔	미상	미상	진주	미상	水使겸직

109) 1. 재임활동의 기본적인 典據는 『조선왕조실록』이며, 『실록』을 제외한 문헌들은 제목을 따로 기재한다.  
 2. 재임활동에서 임명은 ㉔으로 표기하고 사배도 포함한다. 재직은 ㉔로, 줄기에서 재임이 확인되면 ㉔이라고 기록한다. 체직은 ㉔로 기재하며 과관, 이직, 사직, 파직, 쫓도 포함한다.  
 3. 연고지는 현재지명으로 기재한다.  
 4. 비고에는 공신유무, 병사간의 혈연관계, 특별한 이력 등 기타 정보를 기록한다.  
 5.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은 미상으로 처리한다.  
 6. 생몰년 및 특이사항은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는다.

110) 본문에서는 편의상 경상우도로 편입했다.

순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1	尹子當 (?~1422)	1407.10.3㉔~1408.7.13㉔~	미상	미상	칠원	함안	좌명공신 4 李叔蕃 異父兄
		1408년 7월 13일 경상도를 상주진주도·계림안동도로 분리					
		1412년 2월 14일 경상도 좌병영을 우병영으로 승궐					
12	曹備衡 (1376~1440)	1412.2.14㉔~10.10㉔~	무과	미상	창녕	미상	
13	李都芬 (1353~1441)	1413.6.13㉔~	미상	미상	성주	성주	
		1426년 11월 6일 경상좌도의 병사와 수사 혁파					
14	李澄石 (?~1461)	1433.6.27㉔~1434.10.30㉔	무과	미상	양산	양산	좌익공신 3 李澄玉 兄
15	曹備衡	1434.8.7㉔~10.30㉔~	무과	미상	창녕	미상	

## 2. 경상우도

순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	尹子當	1408.7.13㉔~1409.3.16㉔~	미상	미상	칠원	함안	
2	曹備衡	1411.8.2㉔~1412.2.14㉔~	무과	미상	창녕	미상	
		1412년 2월 24일 경상도 좌병영을 우병영으로 승궐					
		1413년 7월 19일 병영을 다시 분리					
3	曹備衡	1413.7.19㉔~9.29㉔~	무과	미상	창녕	미상	
4	辛悅 (?~1418)	1416.4.17㉔~	미상	미상	영산	창녕	辛處康 父
5	金貴寶 (미상)	1418.11.20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개국원종
6	禹博 (미상)	1419.8.10㉔~1420.5.7㉔	미상	미상	단양	미상	
7	禹博	1420.10.24㉔~1422.2.16㉔	미상	미상	단양	미상	
8	李中至 (?~1446)	1422.2.16㉔~	무과	미상	고성	서울	수양대군 養育

순번	성명 (생몰년)	재임 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9	李恪 (1374~1446)	1423.1.25(을)~12.11(계)	무과	미상	덕산	미상	
1426년 11월 6일		경상좌도 병사와 수사 혁파					
1436년 12월 27일		경상좌도 병사 복설					
10	河敬復 (1377~1438)	1438.8.23(을)~1438.8.17(계)	무과	미상	진양	진주	하한 아버지 하숙부 祖父
11	李皎 (?~1446)	1438.8.23(을)~1439.11.11(계)	음서	미상	전주	서울	宣安大君子
12	張友良 (?~1441)	1439.11.13(을)~1441.2.30(계)	미상	가선	단양	미상	재임 주
13	鄭孝全 (?~1454)	1443.7.4(을)~	음서	미상	연일	서울	淑貞翁主 부마
14	崔淑孫 (미상)	1444.11.17(을)~1445.5.28(을)~	무과	미상	통천	창원	崔雲海 孫子 崔潤德 子
15	金義之 (미상)	1446.4.28(계)	무과	미상	미상	미상	
16	權恭 (?~1462)	1446.5.27(을)~	음서	미상	안동	미상	淑謹翁主 부마
17	成奉祖 (1401~1474)	1447.7.1(을)~1449.7(을)	음서	미상	창녕	한양	
18	金有讓 (미상)	1449.8.6(을)~	음서	미상	순천	여수	金承霖 子
19	辛倣晴 (미상)	1450.7.6(을)~1451.5.29(계)	미상	미상	영산	함안	辛悅 姪
20	金允壽 (1387~1462)	1451.6.20(을)~	미상	미상	선산	구미	좌익원종 2
21	金允壽	1452.10.1(을)~	미상	미상	선산	구미	
22	俞益明 (?~1455)	1453.7.28(을)~	미상	미상	창원	김천	좌익원종 2
23	韓瑞龍 (1398~1461)	1455.5.3(을)~1456.3.8(계)	음서	미상	청주	파주	
24	柳洙 (1415~1481)	1456.3.8(을)~1457.7.5(계)	음서	미상	문화	남양주	좌익공신 2 좌리공신 4
25	柳洙	1457.9.19(을)~1458.2.18(계)	음서	미상	문화	남양주	
26	朴炯 (미상)	1458.2.18(을)~1460.1.28(계)	미상	미상	고령	고령	좌익원종 1
27	曹秀文 (미상)	1459.12.3(을)~1461.4.9(계)	미상	미상	한양	양주	趙繼宗 父
28	郭連城 (?~1464)	1461.2.22(을)~27(을)~	무과	미상	청주	미상	정난공신 2

순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29	具文信 (1415~1485)	1463.1.13 <sup>㉠</sup> ~	음서	가선	능성	미상	좌익원종 1 좌리공신 4
30	金乙孫 (미상)	1464.7.6 <sup>㉠</sup> ~15 <sup>㉡</sup> ~	무과	미상	상산	미상	좌익공신 3
31	李仲英 (미상)	1465.7.3.~1467.5.24 <sup>㉠</sup> ~	미상	미상	미상	미상	
32	崔有臨 (1426~1471)	1469.1.10 <sup>㉡</sup> ~	무과	가선	수원	평택	좌익원종 3 좌개공신 3
33	李克均 (1437~1504)	1469.5.29 <sup>㉠</sup> ~1471.3.29 <sup>㉡</sup> ~	문과	미상	광주	서울	
34	河叔溥 (?~1501)	1471.7.7 <sup>㉠</sup> ~1472.11.18 <sup>㉡</sup> ~	무과	미상	진양	하동	河敬復 孫子 河漢子
35	朴居謙 (1413~1481)	1473.6.28 <sup>㉠</sup> ~1474.7.27 <sup>㉡</sup> ~	무과	자헌	밀양	안산	좌익원종 2 좌리공신 4
36	具謙 (미상)	1475.7.15 <sup>㉠</sup> ~1477.1.10 <sup>㉡</sup> ~	음서	미상	능성	미상	좌개공신 3
37	權攀 (1429~1482)	1477.7.24 <sup>㉠</sup> ~1478.2.12 <sup>㉡</sup> ~	음서	자헌	안동	음성	權攀 弟
38	具謙	1478.10.25 <sup>㉠</sup> ~1479.윤10.8 <sup>㉡</sup> ~	음서	가선	능성	미상	
39	王宗信 (미상)	1481.3.29 <sup>㉠</sup> ~1483.1.4 <sup>㉡</sup> ~	미상	가선	개성	미상	
40	金彦庚 (미상)	1483.4.29 <sup>㉠</sup> ~	미상	가선	강릉	파주	
41	李從生 (1423~1495)	1485.6.2 <sup>㉠</sup> ~	무과	가정	함평	하남	좌익원종 2 좌개공신 2
42	沈安仁 (1435~1488)	1487.7.4 <sup>㉠</sup> ~1487.11.2 <sup>㉡</sup> ~	무과	절충	청송	광주	
43	李欽石 (미상)	1488.8.17 <sup>㉠</sup> ~1490.1.9 <sup>㉡</sup>	미상	가선	미상	미상	
44	曹克治 (미상)	1490.1.21 <sup>㉠</sup> ~1491.7.4 <sup>㉡</sup> ~	미상	가선	창녕	미상	좌익원종 2
45	趙益貞 (1436~1498)	1492.2.9 <sup>㉠</sup> ~1493.10.20 <sup>㉡</sup> ~	문과	가선	풍양	양주	
46	辛鏞 (1430~1526)	1494.11.1 <sup>㉠</sup> ~	미상	가선	영산	포천	좌익원종 3
47	李居仁 (1431~1507)	1497.11.27 <sup>㉠</sup> ~	미상	절충	성산	김천	李好誠 子
48	河叔溥	1498.5.10 <sup>㉠</sup> ~	무과	가정	진양	하동	
49	安琛 (1455~1515)	1500.5.29 <sup>㉠</sup> ~	문과	가선	순흥	성남	

순번	성명 (생몰년)	재임 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50	沈順徑 (1462~1542)	1506.9.28㉔~1508.6.25㉔	미상	미상	청송	파주	정국공신 2
51	金錫哲 (1456~?)	1508.12.9㉔~1510.6.1㉔	무과	미상	수원	고양	
52	柳聃年 (?~1526)	1510.6.27㉔~1512.윤5.16㉔	무과	가선	문화	미상	
53	柳繼宗 (미상)	1512.윤5.8㉔~1514.12㉔~	미상	미상	진주	안성	정국공신 3
54	尹熙平 (1469~1545)	1514.1.23㉔~1516.4.19㉔~	무과	미상	해주	양주	정국공신 3
55	曹潤孫 (1469~1548)	1516.1.25㉔~1518.1.12㉔~	미상	미상	창녕	진주	曹淑沂 子
56	成世貞 (1460~?)	1518.4.18㉔~11.16㉔	문과	미상	창녕	고양	成貴達 子
57	金克成 (1474~1540)	1519.1.28㉔~ 『在嶺南日記』	문과	미상	광산	보령	정국공신 3
58	權勝 (?~1522)	1519.11.25㉔~	미상	미상	안동	미상	
59	崔漢洪 (1469~1529)	1521.8.26㉔~1522.2.13㉔~	무과	가선	경주	고양	정국공신 3
60	金世熙 (미상)	1522.4.22㉔~1522.6.22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1	禹孟善 (1475~1551)	1524.4.10㉔~1524.10㉔ 『國朝人物考』	무과	가선	단양	서천	위사원종 (삭훈)
62	李安世 (미상)	1527.2.13㉔~1528.2.8㉔~	무과	미상	용인	서울	
63	宋勳 (미상)	1529.7.16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4	吳世翰 (미상)	1531.7.11㉔~1533.7.26㉔	무과	가선	보성	청원	
65	許寬 (미상)	1535.10.4㉔~ 『榜目』	문과	미상	하양	서울	
66	金舜皐 (1489~1574)	1537.10.12㉔~1539.윤7.1㉔~	무과	미상	순천	안동	
67	方好義 (미상)	1540.4.13㉔~1541.8.1㉔	미상	미상	온양	양주	方輪 子 方好智 兄
68	梁允義 (1489~1564)	1541.8.2㉔~8.1㉔~	무과	가선	남원	군포	
69	金軼 (미상)	1544.4.17㉔~10.8㉔~	무과	미상	미상	미상	
70	金光軫 (1495~?)	1548.8.2㉔~1549.11.20㉔	문과	미상	강릉	강릉	

순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71	張世豪 (미상)	1551.10.15 <sup>㉞</sup> ~1553.6.14 <sup>㉞</sup>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위사원종 (삭훈)
72	金世澣 (미상)	1555.7.27 <sup>㉞</sup> ~	미상	미상	광산	서울	
73	崔宗浩 (미상)	1559.3.16 <sup>㉞</sup>	미상	미상	양천	미상	
74	金洵 (미상)	1559.5.27 <sup>㉞</sup> ~	무과	미상	경주	경주	
75	朴麟壽 (미상)	1561.3.14 <sup>㉞</sup> ~	무과	미상	밀양	연천	차팔 父
76	李榮 (1494~1563)	1562.8.6 <sup>㉞</sup> ~1563.1.20 <sup>㉞</sup>	미상	미상	영천	대구	
77	閔應瑞 (1499~?)	1563.1.20 <sup>㉞</sup> ~	미상	미상	여흥	미상	
78	李文誠 (1503~1575)	1563.2.10 <sup>㉞</sup> ~『國朝人物考』	무과	미상	전의	가평	
79	元俊良 (미상)	1563.10.20 <sup>㉞</sup> ~1564.6.21 <sup>㉞</sup>	무과	미상	원주	평택	
80	吳滄 (미상)	1564.11.3 <sup>㉞</sup> ~	무과	절충	해주	미상	
81	李大伸 (미상)	1566.11.30 <sup>㉞</sup> ~	미상	절충	미상	미상	
82	蘇滄 (미상)	1569.6.6 <sup>㉞</sup>	무과	가선	진주	평택	
83	許世麟 (1507~1579)	소흥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가선	양천	여주	
84	李大伸	하서린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미상	미상	
85	李戩 (미상)	1573.5.2 <sup>㉞</sup>	미상	가선	우계	강릉	李福男 祖父
86	蘇滄	1573.7.11 <sup>㉞</sup> ~『肩巖日記』	무과	가선	진주	평택	
87	崔遠 (미상)	소흥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가선	미상	미상	
88	柳景 (1524~?)	1574.1.5 <sup>㉞</sup> ~『臺營道先生案』	문과	절충	전주	서울	
89	申恪 (?~1592)	1576.8.23 <sup>㉞</sup> ~1578.1.26 <sup>㉞</sup>	미상	미상	평산	미상	
90	金墀 (미상)	1578.4.1 <sup>㉞</sup>	무과	미상	순천	서울	
91	郭燦 (미상)	1578.4.5 <sup>㉞</sup> ~	미상	미상	의령	미상	
92	洪淵 (미상)	1578 <sup>㉞</sup> ~『東萊府志』	문과	가선	남양	서울	

순번	성명 (생몰년)	재임 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93	李頤壽 (미상)	홍연의 후임 『靈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전주	서산	
94	宋重器 (미상)	이이수의 후임 『靈營道先生案』	무과	절충	여산	서울	
95	朴晉 (1560~1597)	송중기의 후임 『靈營道先生案』	무과	가선	밀양	서울	朴麟壽 子
96	卞國幹 (1527~1591)	박진의 후임 『靈營道先生案』	미상	가선	초계	장흥	
97	梁士瑩 (미상)	변국간의 후임 『靈營道先生案』 ~1586.11 <sup>㉔</sup> 『耽羅誌』	음서	절충	미상	미상	
98	李戡	양사영의 후임 『靈營道先生案』	미상	가선	우계	강릉	
99	李泰亨 (1527~?)	1586~1587 『靈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미상	미상	
100	金梁 (미상)	이태형의 후임 『靈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미상	미상	
101	辛應基 (미상)	김찬의 후임 『靈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영월	미상	
102	申喆 (1555~1592)	신응기의 후임 『靈營道先生案』	무과	절충	평산	서울	申砬 弟
103	梁士瑩	1590.6.1 <sup>㉕</sup> ~	음서	절충	미상	미상	
104	曹大坤 (1518~?)	1591 『靈營道先生案』 ~1592.3.3 <sup>㉖</sup>	미상	가선	창녕	미상	
105	金誠一 (1538~1593)	1592.3.3 <sup>㉗</sup> ~4.14 <sup>㉘</sup>	문과	절충	의성	안동	
재임 활동 미상							
106	趙賚 (1374~1449)	1424~1434. 사이 <sup>㉙</sup>	무과	미상	한양	양주	趙仁沃 子
107	成勝	1440. 이후	미상	미상	창녕	서울	
108	李忠傑 (미상)	1508.1.16. 이전	문과	미상	장수	진주	
109	李文亨 (미상)	명종대 『嶺南邑誌』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10	李彥華 (미상)	명종대 『金海邑誌』	미상	미상	미상	미상	

### 3. 경상좌도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408년 7월 13일	경상도를 상주진주도·계림안동도로 분리					
1	曹瑗 (?~1424)	1408.7.13 <sup>㉠</sup> ~	미상	미상	창녕	창녕	水使겸직
2	尹尙 (1374~1418)	1410.5.14 <sup>㉠</sup> ~1412.2.14 <sup>㉡</sup>	미상	미상	파평	광주	鷄林府尹 겸직 尹坤 弟
	1412년 2월 14일	경상도 좌병영을 우병영으로 승격					
	1413년 7월 19일	병영을 다시 분리					
3	尹坤 (?~1422)	1413.7.19 <sup>㉠</sup> ~	미상	미상	파평	파주	尹尙 兄
4	權蔓 (?~1423)	1416.4.17 <sup>㉠</sup> ~	고려 소과	미상	안동	예천	
5	李承幹 (미상)	1416.11.26 <sup>㉡</sup> ~	미상	미상	전의	미상	河菴 壻
6	權蔓	1417.8.20 <sup>㉠</sup> ~	고려 소과	미상	안동	예천	
7	朴實 (?~1431)	1418.2.16 <sup>㉡</sup> ~6.17 <sup>㉢</sup>	음서	미상	함양	함양	朴子安 子
8	崔沄 (?~1431)	1418.6.17 <sup>㉡</sup> ~	미상	미상	미상	미상	
9	李順蒙 (1386~1449)	1420.5.7 <sup>㉠</sup> ~	미상	미상	영천	양평	
10	玄貴命 (?~1425)	1422.9.25 <sup>㉠</sup> ~1423.8.26 <sup>㉡</sup>	미상	미상	연주	미상	
11	朴彥忠 (미상)	1423.8.26 <sup>㉠</sup> ~	미상	미상	밀양	밀양	卞季良 丈
12	李澄 (1375~1435)	1423.12.11 <sup>㉠</sup> ~	음서	미상	전주	서울	宜安大君 子
	1426년 11월 6일	경상좌도 병사와 수사 혁파					
	1436년 12월 27일	경상좌도 병사 복설					
13	李思儉 (?~1446)	1437.1.5 <sup>㉠</sup> ~1439.1.2 <sup>㉡</sup>	무과	미상	양성	포천	
14	申得海 (미상)	1439.1.2 <sup>㉠</sup> ~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5	李澄玉 (?~1453)	1439.9.22 <sup>㉠</sup> ~11.22 <sup>㉡</sup> ~	무과	미상	인천	양산	李澄石 弟
16	李穰 (?~1453)	1441.9.17~1443.9.12 <sup>㉢</sup>	음서	미상	전주	서울	宜安大君 孫子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 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7	李樺 (1391~1459)	1443.9.12㉔~	미상	미상	전의	안동	
18	柳江 (?~1458)	1444.9.4㉔~	미상	미상	문화	미상	좌익원종 2
19	李澄玉	1445.11.5.~1447.2.5㉔	무과	미상	인천	양산	
20	權孟慶 (미상)	1447.5.12㉔~1448.7.9㉔~	미상	미상	안동	미상	
21	金自雄 (미상)	1448.5.11㉔~	무과	미상	미상	미상	
22	趙石岡 (?~1454)	1451.4.2㉔~	무과	미상	미상	미상	
23	河漢	1452.10.1㉔~	미상	미상	진주	하동	좌익원종 2 河敬復 子 河叔壽 父
24	李允孫 (1414~1467)	1453.7.28㉔~	무과	미상	가평	서울	좌익원종 1
25	河漢	1454.6.27㉔~	미상	미상	진주	하동	
26	河漢	1455.4.4㉔~	미상	미상	진주	하동	
27	李好誠 (1397~1467)	1457.9.19㉔~1459.10.24㉔	무과	미상	광평	김천	좌익원종 2 李居仁 父
28	洪益生 (미상)	1461.1.20㉔~1462.3.27㉔~	미상	미상	남양	화성	
29	鄭種 (1417~1476)	1463.4.23㉔~	무과	미상	동래	고령	좌익원종 1 적개공신 3
30	鄭種	1464.1.18㉔~	무과	미상	동래	고령	
31	卞袍 (?~1488)	1464.7.6㉔~	무과	미상	초계	미상	
32	閔孝源 (미상)	1465.7.3㉔~	미상	미상	여흥	미상	좌익원종 3
33	李衡 (미상)	1467.5.24㉔~	음서	미상	전주	미상	좌익원종 2
34	韓致義 (1440~1473)	1469.1.10㉔~	음서	가선	청주	서울	외척
35	林自蕃 (?~1486)	1469.6.5㉔~	미상	미상	예천	예천	정난공신 3
36	金嶠 (1428~1480)	1471.7.13㉔~1472.11.4㉔~	무과	미상	선사	파주	좌익원종 1 적개공신 1 좌리공신 4
37	金舜臣 (미상)	1473.6.28㉔~1472.8.15㉔	미상	가선	연안	미상	
38	金伯謙 (1429~1506)	1474.9.15㉔~1475.8.22㉔~	무과	가선	광산	미상	적개공신 3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39	辛鑄	1476.10.26 <sup>㉠</sup> ~1477.8.20 <sup>㉡</sup> ~	무과	미상	영산	포천	
40	薛茂林 (미상)	1478.9.24 <sup>㉠</sup> ~	미상	절충	경주	미상	
41	慶由恭 (미상)	1480.11.26 <sup>㉠</sup> ~	미상	가선	청주	신천	
42	尹未孫 (미상)	1482.12.1 <sup>㉠</sup> ~1483.1.4 <sup>㉡</sup> ~	미상	미상	남원	미상	적개공신 2
43	李叔琪 (1429~1489)	1485.1.27 <sup>㉠</sup> ~3.2 <sup>㉡</sup> ~	무과	자헌	연안	용인	좌익원종 2 적개공신 2
44	吳純 (미상)	1487.5.23 <sup>㉠</sup> ~1488.8.7 <sup>㉡</sup> ~	미상	가선	보성	미상	吳子慶 子
45	邊處寧 (미상)	1489.5.9 <sup>㉠</sup> ~1491.4.21 <sup>㉡</sup> ~	미상	가선	원주	미상	
46	河叔溥	1491.4.21 <sup>㉠</sup> ~7.4 <sup>㉡</sup> ~	무과	가정	진양	하동	
47	曹淑沂 (1434~1509)	1493.윤5.22 <sup>㉠</sup> ~1494.11.6 <sup>㉡</sup> ~	문과	절충	창녕	진주	曹潤孫 父
48	具詮 (미상)	1497.10.6 <sup>㉠</sup> ~	미상	통정	미상	미상	
49	柳繼宗	1508.11.17 <sup>㉠</sup> ~1510.6.11 <sup>㉡</sup>	미상	미상	진주	안성	정국공신 3
50	黃衡 (1459~1520)	1510.6.27 <sup>㉠</sup> ~1511.3.7 <sup>㉡</sup>	무과	절충	창원	미상	黃琛 父
51	成秀才 (?~1515)	1511.9.15 <sup>㉡</sup> ~1512.5.7 <sup>㉢</sup> ~	무과	미상	창녕	미상	
52	李允儉 (1451~1520)	1513.3.11 <sup>㉠</sup> ~	무과	가선	합천	합천	
53	沈順徑 (1462~1542)	1514.7.8 <sup>㉠</sup> ~12.12 <sup>㉡</sup> ~	무과	가선	청송	파주	정국공신 3
54	曹閔孫 (1469~1548)	1515.11.9 <sup>㉡</sup> ~	미상	미상	창녕	진주	정국원종
55	黃琛 (미상)	1516.2.20 <sup>㉠</sup> ~	미상	미상	창원	서울	黃衡 子
56	李券 (미상)	1517.2.29 <sup>㉡</sup> ~1517.2.29 <sup>㉢</sup> ~	무과	미상	덕수	서울	李芾 兄
57	柳湄 (미상)	1518.1.5 <sup>㉠</sup> ~10.26 <sup>㉡</sup> ~	미상	미상	미상	미상	水使검직
58	尹熙平 (1469~1545)	1523.6.14 <sup>㉡</sup> ~10.25 <sup>㉢</sup> ~	무과	미상	해주	양주	정국공신 3
59	李安世 (미상)	1531.4.25 <sup>㉠</sup> ~	무과	미상	용인	서울	
60	金鐸 (미상)	1533.5.3 <sup>㉠</sup> ~1534.4.1 <sup>㉡</sup>	문과	미상	고령	서울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 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61	金舜皐	1536.6.11㉔	무과	미상	순천	안동	
62	曹允武 (미상)	1536.6.21㉕~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3	朴英 (1471~1540)	1538.7.8㉕~1540.3.29㉕	무과	미상	밀양	선산	讓寧大君 外孫
64	張世豪	1540.9㉕~1541.10㉕『俛仰集』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5	許碾 (?~1545)	1545.3.11㉕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6	金舜皐	1545.8.19㉕~	무과	미상	순천	안동	
67	李見 (미상)	1550.10.23㉕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8	李汀 (미상)	1551.3.27㉕	무과	미상	미상	미상	
69	金胤宗 (미상)	1551㉕~1553.2.4㉕	무과	미상	안동	서울	
70	趙安國 (1510~1573)	1553.5.16㉕~	무과	가선	풍양	미상	
71	方好智 (미상)	1556.9.26㉕~	무과	가선	운양	서울	方輪子 方好義弟
72	閔應瑞 (1499~?)	1556.10.28㉕~	미상	가선	여흥	미상	
73	吳誠 (미상)	1557.7.27㉕~	무과	미상	보성	서울	
74	尹先智 (1501~1568)	1557.9.27㉕~1559.5.27㉕~	무과	미상	파평	파주	
75	張彦邦 (미상)	1559.8.10㉕~	무과	미상	덕수	서울	
76	崔終浩 (미상)	1561.9.25㉕~	미상	미상	양천	미상	
77	李大伸	1563.10.10㉕	미상	절충	미상	미상	
78	吳誠	1563.10.4㉕~1564.5.18㉕~	무과	미상	보성	서울	
79	崔希孝 (1509~1589)	1566.7.11㉕~11.21㉕	음서	가선	수성	미상	
80	張弼武 (1510~1574)	1569.5.1㉕~10㉕『國朝人物考』	무과	가선	구례	영동	
81	林晉 (1526~1587)	1573.2.20㉕~8.6㉕	무과	미상	나주	서울	林鵬子
82	張弼武	1573.10.6㉕~1574.4㉕	무과	가선	구례	영동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83	李潤德 (1529~1611)	1574.4.13(을)~	미상	미상	광주	성남	
84	鄭世弼 (미상)	1574.12.5(을)~	무과	미상	영일	합천	
85	柳攄	1575.2.29(을)~	문과	미상	전주	서울	
86	蘇滄	1576.8.27(제)	무과	미상	진주	평택	
87	辛應基	1580 「辛應基節度使善政碑」	무과	미상	영월	미상	
88	申翼 (미상)	1586.3(을)~『昌原邑誌』	미상	미상	평산	서울	
89	李珪 (?~1592)	1592.4.14(을)~	미상	미상	미상	미상	

#### 4. 전라도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	金贊吉 (?~1405)	1397.1.28(제)	行伍	미상	고성	고창	
2	洪恕 (?~1418)	1402.2.12(을)~11.10(제)~	음서	미상	남양	미상	좌명공신 4
3	崔述 (1356~1426)	1402(을)~1404(을)	미상	미상	강릉	강릉	崔有璉 子
4	金繼志 (?~1410)	1406.4.4(을)~	미상	미상	광산	정읍	
5	李之實 (미상)	1406.7(을)~1408.10.1(을)~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	林整 (1356~1413)	1407.3.3(을)~	미상	미상	평택	용인	
7	成發道 (?~1418)	1407.10.3(을)~	미상	미상	창녕	포천	成石璘 子
8	姜思德	1408.7.13(을)~1409.9.19(을)	미상	미상	미상	미상	
9	馬天牧 (1358~1431)	1412.5.3(을)~1413.9.29(을)~	음서	미상	장흥	곡성	좌명공신 3
10	鄭耕 (1370~1421)	1414.12.13(을)~	미상	미상	나주	광주	鄭地 子
11	趙源 (미상)	1415.9.4(을)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2	鄭耕	1416.7.25(을)~1417.1.13(을)	미상	미상	나주	광주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 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3	馬天牧	1417.4.25㉔~9.5㉔	음서	미상	장흥	곡성	
14	成達生 (1376~1444)	1417.12.3㉔~	무과	미상	창녕	파주	監司겸직
15	鄭耕	1419.2.26㉔~	미상	미상	나주	광주	
16	朴礎 (1367~1454)	1419.9.25㉔~1420.10.16㉔	미상	미상	함양	미상	
17	文貴 (?~1439)	1422.9.25㉔~	미상	미상	남평	미상	외척
18	文孝宗 (1365~1444)	1423.12.11㉔	음서	미상	남평	나주	
19	李恪	1429㉔~1430.3.26㉔	무과	미상	덕산	미상	
20	洪師錫 (?~1448)	1434.10.30㉔~	무과	미상	남양	미상	
21	朴信生 (미상)	1435.7.20㉔~	미상	미상	밀양	의성	莊懿宮主 叔父
22	文貴	1437.6.30㉔~1439.5.25㉔	미상	미상	남평	미상	
23	南宮啓 (?~1446)	1441.4.19㉔~	음서	미상	함열	미상	좌명원종
24	朴以寧 (?~1453)	1443.7.12㉔~1444.9.4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25	金有讓	1444.9.4㉔~	음서	미상	순천	여주	金承憲 子
26	尹重富 (?~1451)	1446.1.12㉔~	음서	미상	서흥	경주	尹鳳 弟
27	崔淑孫	1453.10.2㉔~	무과	미상	통천	창원	
28	崔淑孫	1455.4.4㉔~1455.10.7㉔	무과	미상	통천	창원	
29	李樺 (1391~1459)	1455.11.17㉔~	미상	미상	전의	안동	
30	李昇平 (?~1460)	1457.4.7㉔~1458.9.2㉔~	음서	미상	장수	장수	좌익원종 2 李從茂 子 李士平 兄
31	柳洙	1459.3.20㉔~	음서	가선	문화	남양 주	
32	洪興祚 (미상)	1460 윤11.11㉔~1462.9.24 ㉔	미상	미상	남양	미상	
33	李士平 (미상)	1462.8.2㉔~1464.2.24㉔~	음서	미상	장수	장수	좌익원종 2 李從茂 子 李昇平 弟
34	曹繼宗	1464.7.6㉔~	미상	미상	한양	양주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35	辛鑄	1467.5.24㉔~	미상	가선	영산	포천	
36	許亨孫 (1427~1477)	1467.9.20㉔~1469.윤2.6㉔	무과	미상	양천	파주	
37	許琮 (1434~1494)	1469.5.29㉔~	문과	승정	양천	서울	적개공신 1 좌리공신 4
38	康袞 (1411~1484)	1470㉔~	미상	자헌	신천	미상	익대공신 3 좌리공신 3
39	朴堧 (미상)	1472.6.29㉔~1474.5.20㉔~	미상	가선	미상	미상	적개공신 3
40	林自蕃	1474.8.9㉔~1475.8.22㉔~	미상	자헌	예천	예천	
41	河叔溥	1476.8.39㉔~1476.12.5㉔	무과	가정	진양	하동	
42	李叔琪	1476.12.6㉔~1477.9.20㉔~	무과	가정	연안	김천	
43	尹未孫	1479.윤10.8㉔~	미상	가선	남원	미상	
44	辛以中 (미상)	1482.3.1㉔~	미상	가선	영월	미상	
45	卞宗仁 (1433~1500)	1483.2.11㉔~1483.2.29㉔~	무과	가선	밀양	부천	적개공신 1
46	成俶 (미상)	1487.5.23.㉔	문과	절충	창녕	연천	
47	李季全 (1450~1506)	1487.5.23㉔~1489.4.4㉔	무과	가선	평창	서울	
48	辛鑄	1490.4.29㉔~1491.7.4㉔	미상	가선	영산	포천	
49	邊靖 (미상)	1492.12.17㉔	미상	가선	원주	서울	좌익원종 3 德川翁主 子
50	金瑞衡 (미상)	1492.12.19㉔~1494.11.6㉔~	미상	가선	미상	양주	
51	吳純	1495.1.27㉔~1497.3.1㉔~	미상	가선	보성	미상	吳子慶 子
52	元仲桓 (미상)	1497.2.4㉔~10.23㉔	미상	가선	원주	원주	
53	呂允哲 (?~1509)	1497.10.25㉔~	미상	절충	함양	미상	呂自新 子
54	韓忠仁	1498.윤11.8㉔~1500.3.20㉔	미상	가선	청주	고양	외척
55	李胤宗 (1451~1533)	1509.윤9.17㉔~1510.6.12㉔	미상	미상	광산	장성	
56	申繼宗 (미상)	1510.6.27㉔~	무과	미상	미상	아산	
57	李宗仁 (1458~1533)	1513.4.24㉔~1515.4.13㉔~	무과	가선	함평	나주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 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58	崔漢洪	1515.7.7㉞~1516.6.19㉞~	무과	가선	경주	고양	정국공신 2
59	黃琛	1517.8.22㉞~1519.6.26㉞~	미상	미상	창원	서울	黃衡子
60	權勝	1520.9.21㉞~1522.1.5㉞	미상	미상	안동	미상	
61	吳堡 (미상)	1522.6.11㉞~1523.7.5㉞~	미상	미상	해주	미상	
62	李安世	1524.1.9㉞~	무과	미상	용인	서울	
63	方輪 (1464~1534)	1526.2.10㉞~1528.4.5㉞~	미상	가선	은양	양주	方好義·方好智父
64	禹孟善	1528.4.5㉞~1529.4.10㉞~	무과	가선	단양	서천	
65	曹允武	1534.11.24㉞~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6	金城 (미상)	1537.8.23㉞	문과	미상	광주	광주	
67	李夢麟 (1496~1563)	1539.8.12㉞~	미상	가선	경주	미상	
68	林鵬 (1486~1553)	1540.12.29㉞	문과	봉정	나주	서울	林晉父
69	韓琦 (미상)	1544.7.5㉞~	무과	통정	청주	서울	
70	金公奭 (1477~1553)	1545.11.8㉞~	무과	미상	안동	서울	
71	林千孫 (1478~1565)	1547.1.17㉞~1548.3.10㉞~	무과	미상	평택	여주	
72	崔守仁 (미상)	1553.6.12㉞~	미상	가선	해주	미상	
73	元績 (?~1555)	1553.11.16㉞~1555.5.13㉞	무과	미상	원주	원주	
74	趙安國	1555.5.16㉞~7.11㉞	무과	가선	풍양	미상	
75	李光軾	1555.8.25㉞~10.9㉞	미상	가선	우계	강릉	李之芳子
76	南致勤 (?~1570)	1555.10.10㉞~1557.10.6㉞	무과	절충	의령	서울	
77	張彥邦	1557.10.6㉞~	무과	미상	덕수	서울	
78	崔希孝	1559.2.10㉞~	음서	가선	수성	평택	
79	李元祐 (미상)	1562.6.10㉞~1563.2.28㉞	음서	가선	덕수	미상	李芑子
80	白惟儉 (미상)	1564.6.9㉞~	미상	미상	수성	양주	
81	韓屹 (미상)	1565.3.22㉞~1565.11.9㉞	무과	미상	현풍	미상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82	南致勤	1565.11.9 <sup>㉠</sup> ~	무과	미상	의령	미상	
83	白惟儉	1566.7.18 <sup>㉠</sup> ~	미상	미상	수성	양주	
84	李戡	1567.2.29 <sup>㉠</sup> ~1568.6.12 <sup>㉡</sup>	미상	가선	우계	강릉	
85	邊協 (1528~1590)	1568.6.12 <sup>㉠</sup> ~	무과	가선	원주	양주	
86	李龜琛 (1514~1592)	1572.11.13 <sup>㉠</sup> ~1573.5.2 <sup>㉡</sup>	음서	미상	전주	미상	
87	申翌 (미상)	1575.2.29 <sup>㉠</sup> ~	미상	미상	평산	서울	
88	成應吉 (미상)	1587.6.6 <sup>㉠</sup> ~1589.1.15 <sup>㉡</sup> ~	미상	미상	창녕	서산	
89	李鎰 (1538~1601)	1589.8.16 <sup>㉠</sup> ~	무과	미상	용인	용인	
90	楊大樹 (?~1592)	1592.3 <sup>㉠</sup> 『耽羅誌』	무과	미상	청주	미상	
91	崔遠	1592.4 <sup>㉠</sup> ~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재임 활동 미상							
92	李興淳	1439.7.10. 이전 <sup>㉢</sup>	음서	미상	전주	서울	

## 5. 충청도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	李承源 (미상)	1394.3.5 <sup>㉠</sup> ~	미상	미상	청주	미상	개국원종
2	李龜鐵 (?~1413)	1396.10.23 <sup>㉠</sup> ~1397.1.28 <sup>㉡</sup>	미상	미상	순천	미상	
3	趙英茂 (?~1414)	1397.1.28 <sup>㉠</sup> ~5.21 <sup>㉡</sup>	미상	미상	한양	한양	개국공신 2 정사공신 1
4	金南秀 (1350~1423)	1402.6.11 <sup>㉡</sup>	미상	미상	연안	청양	
5	柳龍生	1404.6.6 <sup>㉠</sup> ~	음서	미상	진주	미상	개국원종
6	柳濕	1405.7.8 <sup>㉠</sup> ~	음서	미상	고흥	원주	水使겸직
7	崔迤	1406.4.11 <sup>㉡</sup> ~	미상	미상	강릉	강릉	
8	趙狷	1407.3.3 <sup>㉠</sup> ~	고려 문과	미상	평양	성남	
9	李都芬	1407.10.3 <sup>㉠</sup> ~1408.5.17 <sup>㉡</sup>	미상	미상	성주	성주	
10	李龜鐵	1408.7.13 <sup>㉠</sup> ~	미상	미상	순천	미상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 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1	辛有定 (1347~1426)	1411.3.8㉔~1412.7.19㉔	음서	미상	영산	미상	개국원종 水使겸직
12	金重寶 (?~1413)	1412.7.19㉔~1413.5.1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3	李之實	1413.3.26㉔~1413.5.1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4	李之實	1414.10.13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5	柳濕	1416.2.5㉔~	음서	미상	고흥	완주	水使겸직
16	金尙旅 (미상)	1418.5.5㉔~1419.5.7㉔	미상	미상	수원	예산	
17	李中至	1419.5.7㉔~8.25㉔~	무과	미상	고성	서울	
18	朴光衍 (?~1425)	1421.6.2㉔~1422.9.25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9	李興發 (1389~1439)	1422.9.25㉔~	음서	미상	전주	서울	李元桂 孫子
20	心寶 (?~1425)	1422.12.13㉔~1423.10.10	미상	미상	풍산	서울	외척
21	趙寶	1423.10.17㉔~12.11㉔	무과	미상	한양	양주	趙仁沃 子
22	李皎	1432.4.20㉔~1434.8.24㉔	음서	미상	전주	서울	李和 子
23	金益生 (미상)	1434.8.24㉔~	미상	가선	김녕	미상	
24	李思任 (미상)	1442.7.3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정난원종
25	安崇直 (미상)	1444.9.4㉔~1445.11.3㉔~	미상	미상	순흥	미상	安景恭 孫子
26	李榬 (?~1455)	1445.11.3㉔~	음서	미상	전의	서울	慶愼公主 駙馬
27	洪海 (미상)	1448.2.4㉔~1449.4.3㉔~	음서	승덕	남양	한양	淑愼翁主 駙馬
28	崔潤德 (미상)	1449.4.3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29	辛處康 (?~1453)	1450.윤1.17㉔~1451.10.2㉔~	미상	미상	영산	영산	辛悅 子
30	池淨	1453.10.2㉔~10.11㉔	미상	미상	충주	안동	
31	成勝	1453.10.11㉔~1455.2.13㉔~	미상	미상	창녕	서울	
32	李宗睦 (미상)	1455.1.30㉔~	미상	미상	신평	흥성	李宗孝 弟
33	李宗孝 (미상)	1455.8.19㉔~12.17㉔~	미상	미상	신평	홍주	좌익원종 2 李宗睦 兄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34	鄭種	1457.1.23㉔~	무과	미상	동래	고령	
35	黃致身 (1397~1484)	1457.3.20㉔~12.6㉔	음서	정헌	장수	고양	黃晄子
36	康袞	1459.1.30㉔~1460.7.11㉔~	미상	미상	신천	미상	
37	李宗孝	1460.12.3㉔~1461.8.9㉔	미상	미상	신평	홍성	
38	李允孫	1462.8.9㉔~10.28㉔~	무과	미상	가평	서울	
39	權軀 (?~1467)	1463.7.6㉔~1464.2.20㉔~	무과	미상	안동	충주	정난공신 3
40	李允孫	1464.7.6㉔~1465.9.7㉔~	무과	미상	가평	서울	
41	李徠 (미상)	1465.11.16㉔~12.19㉔	문과	창선	전주	서울	孝寧大君 孫子
42	李復 (1428~?)	1466.1.19㉔~1467.10.14㉔~	음서	가선	전주	서울	익대공신 2 定宗 孫子 李衍 兄
43	李衍 (미상)	1468.1.29㉔~	음서	미상	전주	서울	定宗 孫子 李復 弟
44	尹欽 (1418~1485)	1468.3㉔~	음서	가정	파평	파주	좌익원종 2
45	成賁達 (미상)	1468.10.6㉔~1469.윤2.9㉔~	미상	통정	창녕	미상	成世貞 父
46	李仲英	1469.윤2.27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47	金奉元 (미상)	1471.윤9.1㉔~1472.12.4㉔	미상	미상	전주	미상	
48	朴良信 (미상)	1472.6.17㉔~1474.7.25㉔	미상	절충	미상	미상	
49	金瑞衡	1475.4.11㉔~6.7㉔	미상	미상	미상	양주	
50	李從生	1475.6.29㉔~1476.12.14㉔	무과	절충	함평	하남	
51	安仁厚 (미상)	1477.1.10㉔~1478.1.20㉔~	미상	미상	순흥	미상	좌익원종 3
52	朴埴	1479.2.11㉔~1481.2.14㉔	미상	가선	고성	미상	적개공신 3
53	朴居謙	1481.2.14㉔~5.27㉔	무과	자헌	밀양	안산	
54	裴孟達 (1411~?)	1481.5.21㉔~	미상	가정	곤양	미상	좌익원종 1 적개공신 2
55	孟碩欽 (1429~?)	배맹달 후임, 구경 선임	미상	가정	신창	성남	적개공신 2
56	具謙	1485.4.15㉔~	음서	가선	능성	미상	적개공신 3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57	孫繼良 (미상)	1488.8.17 <sup>㉔</sup> ~	미상	가선	밀양	미상	
58	邊脩 (1447~1524)	1489.5.18 <sup>㉔</sup> ~1490.8.19 <sup>㉔</sup> ~	무과	절충	원주	양평	정국공신 3
59	李蓀 (1439~1520)	1492.10.5 <sup>㉔</sup> ~	문과	절충	광주	광주	정국공신 3
60	李滋 (1441~1516)	1494.10.26 <sup>㉔</sup> ~	문과	절충	고성	안동	
61	禹賢孫 (미상)	1498.윤11.8 <sup>㉔</sup> ~	무과	통정	단양	미상	
62	河叔溥	1501.1 <sup>㉔</sup> ~11.3 <sup>㉔</sup>	무과	미상	진양	하동	
63	崔漢洪	1508.11.1 <sup>㉔</sup>	무과	미상	경주	고양	
64	方輪	1512.10.21 <sup>㉔</sup> ~1513.1.23 <sup>㉔</sup> ~	무과	미상	은양	양주	
65	趙舜 (1467~1529)	1513.1.26 <sup>㉔</sup> ~1515.2.5 <sup>㉔</sup>	문과	미상	함안	함안	
66	金延壽 (?~1515)	1515.2.10 <sup>㉔</sup> ~2.23 <sup>㉔</sup>	문과	미상	안동	서울	
67	成夢井 (1471~1517)	1517.3.16 <sup>㉔</sup> ~8.27 <sup>㉔</sup>	문과	가선	창녕	대전	정국공신 4
68	禹孟善	1519.9.10 <sup>㉔</sup> ~11.3 <sup>㉔</sup> ~	무과	가선	단양	서천	
69	金秀淵 (미상)	1531.8.7 <sup>㉔</sup> ~	미상	미상	미상	미상	
70	李亨順 (1475~1541)	1535.6.24 <sup>㉔</sup> ~11.15 <sup>㉔</sup> ~	무과	미상	전주	서울	
71	李亨順	1536.6.21 <sup>㉔</sup> ~1537.6.17 <sup>㉔</sup>	무과	미상	전주	서울	
72	吳世翰	1538.7.19 <sup>㉔</sup> ~	무과	가선	보성	청원	
73	元彭祖 (1473~1542)	1539.10.17 <sup>㉔</sup> ~	미상	미상	원주	여주	
74	李夢麟	1544.7.27 <sup>㉔</sup> ~8.5 <sup>㉔</sup> ~	미상	미상	경주	미상	
75	奉承宗 (미상)	1547.1.27 <sup>㉔</sup> ~	미상	미상	하음	미상	
76	邊明胤 (미상)	1553.4.7 <sup>㉔</sup>	미상	미상	원주	미상	
77	金世澣	1553.4.13 <sup>㉔</sup> ~1554.16 <sup>㉔</sup> ~	미상	미상	광산	서울	
78	許世麟	1562.6.6 <sup>㉔</sup> ~	미상	미상	양천	여주	
79	白惟儉	1564.1.16 <sup>㉔</sup> ~6.9 <sup>㉔</sup>	미상	미상	수성	양주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80	李大伸	1564.6.9 <sup>㉠</sup> ~	미상	미상	미상	미상	
81	洪致武 (미상)	1566.6.17 <sup>㉡</sup> ~	무과	미상	미상	미상	
82	李戡	1574.3.15 <sup>㉢</sup>	미상	가선	우계	강릉	
83	金鏞 (미상)	1578.4.7 <sup>㉣</sup>	문과	미상	청도	예산	
84	鄭元祥 (?~1589)	1589.1.11 <sup>㉤</sup>	미상	미상	미상	미상	
85	申翬	1592.6.29 <sup>㉥</sup>	미상	미상	평산	미상	
재임 활동 미상							
86	金用超 (?~1406)	1406. 이전 <sup>㉦</sup>	고려 문과	미상	의성	용인	
87	李葦 (1376~1451)	태종~세종대 <sup>㉧</sup>	무과	미상	예안	서울	
88	申玉衡 (미상)	1526. 이전	미상	미상	평산	미상	
89	李元祐 (미상)	1550. 4.25 이전	음서	미상	덕수	서울	李芾子

## 〈참고문헌〉

### 1. 자료

『朝鮮王朝實錄』, 『高麗史節要』,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會通』, 『大典通編』, 『臺營道先生案』, 『長興府誌』, 『新增昇平志』, 『昌原邑誌』, 『耽羅誌』, 『永嘉誌』, 『東萊府志』, 『浩亭集』

### 2. 저서

金淇森, 柳承宙, 沈允洪, 『全羅兵營史研究-康津兵營城과 하멜滯留址 攷研』, 조선대학교, 1999.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http://uci.or.kr//G901:A-0008420244@N2M>

오종록,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2014.  
<http://uci.or.kr//G901:A-0006522734@N2M>

\_\_\_\_\_,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2014.  
<http://uci.or.kr//G901:A-0006522737@N2M>

육군본부,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1968.  
<http://uci.or.kr//G901:A-0008260825@N2M>

\_\_\_\_\_, 『한국군사사5 조선전기 I』, 육군본부, 2012.  
<http://uci.or.kr//G901:A-0006416746@N2M>

### 3. 논문

강병훈, “조선전기 경상우병영의 설치와 이설”, 『민족문화논총』 79, 2021.  
<http://dx.doi.org/10.15186/ikc.2021.12.31.06>

김양수·김양식, 「조선후기 忠淸監司와 淸州守令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한국사연구회』 125, 2004.  
<http://uci.or.kr//G704-000361.2004..125.001@N2M>

김원혁, 「조선 성종대 '領敦寧以上' 집단의 성립과 정치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 김윤주,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 『韓國史學報』 35, 2009.  
<http://uci.or.kr//G901:A-0002684276@N2M>
- 김종필, 「조선시대 국왕권력 이양 사례연구 -선위와 대리청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http://uci.or.kr//I804:11004-200000577741@N2M>
- 김지연, 「朝鮮初期 宗親 仕宦의 推移」, 『서울과 역사』 75, 2010.  
<http://dx.doi.org/10.22827/seoul.2010..75.002>
- 박도식, 「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의 研究」, 『人文學研究』 9, 2005.  
<http://uci.or.kr//I410-ECN-0101-2014-001-001392687@N2M>
- 박용국, 「太宗代 河崙의 정치적 存在樣態의 變化」, 『남명학연구』 28, 2009.  
<http://uci.or.kr//G901:A-0002748227@N2M>
- 박천식, 「朝鮮 開國功臣의 冊封過程과 待遇」, 『論文集』 9, 1976.  
<http://uci.or.kr//G901:A-0000333050@N2M>
- \_\_\_\_\_, 「開國原從功臣의 研究」, 『論文集』, 10, 1976.  
<http://uci.or.kr//G901:A-0000352924@N2M>
- 서병패, 「崔有漣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분석」, 『詳明史學』 10, 2006.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2495495@N2M>
- 장병인, 「朝鮮初期의 兵馬節度使」, 『韓國學報』 34, 1984.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0442549@N2M>
- 정해은, 「조선시대 武科榜目の 현황과 사료적 특성」, 『군사』 47, 2002.  
<http://uci.or.kr//G901:A-0001704987@N2M>
- 이기명, 「조선시대 관찰사의 본향상피 재검토」, 『역사와 교육』 17, 2013.  
<http://uci.or.kr//I410-ECN-0101-2014-910-000558769@N2M>
- 오중록, 「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 上·下」, 『震檀學報』 59·60, 1985.  
<http://uci.or.kr//I410-ECN-0101-2014-910-000558103@N2M>

유동호,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http://uci.or.kr//G901:A-0005793687@N2M>

이동희, 「19世紀 前半 守令의 任用實態」, 『전북사학』 11·12, 1989.

<http://uci.or.kr//G901:A-0000766341@N2M>

\_\_\_\_\_, 「조선시대 전라도관찰사 임용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 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1-900-000078809@N2M>

최이돈, 「조선초기 왕실 친족의 신분적 성격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진단학회』 117, 2013.

<http://uci.or.kr//G901:A-0003337894@N2M>

최정용, 「세조조 원종공신의 책정과정과 성격」, 『창원사학』 2, 1995.

한충희, 「朝鮮 世祖代(1455-1468) 原從功臣研究-1,2等功臣을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22, 2013.

<http://uci.or.kr//I410-ECN-0102-2014-900-001556205@N2M>

<Abstract>

## The Re-appointment of Hasamdo's Soldier in the Early Joseon Period

Gam, Byung-Hoon

This paper was written to analyze the tenure of Hasamdo soldie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o understand how the soldiers actually operated. The main historical materials referred to in the study were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ith various eupji's "Siran" used in addition to these records. The scope of the study ranges from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to 1592, whe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roke out.

A total of 395 soldiers were appointed to Hasamdo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mong them, just 31 soldiers, or 8 percent, worked in the same province continuously, as assigning one soldier to a specific region for a long time was considered to create the risk of them claiming their own private land or usurping military authority.

While the statutory guaranteed term of service for soldiers was two years, or 24 months, our analysis found that the average term was only half this duration, or 12 months. Terms were shortened due to failure of an operation, personal circumstances or corruption of the soldie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re were a total of 52 families, and 120 families produced Hasamdo Island. The families that produced more than two of them were 29 families and 55 families of 55 families.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ies that produced Hasamdo soldiers, unlike the late Joseon Dynasty, those who served as soldiers are intertwined with blood relations.

Because soldiers are external workers, the main epithelium was also applied to the epithelium system. Therefore, when we look at the hometowns and places of appointment of those who were appointed as soldiers, Seoul and Gyeonggi-do were generally somewhat dominant. By period, more people from their hometowns were appointed in the 15th century, but this decreased in the 16th century.

At the time of his appointment as a soldier, the official goods were mainly composed of second-class gaseon godfathers, followed by third-class Dang Sanggwan was appointed. In addition, more than a family loan was appointed, but the ratio was only 12%. By age, the largest demographic groups were soldiers appointed in their 40s and 50s, followed by those in their 60s and 30s.

Keywords: the early Joseon period, ByeongmaJeoldosa, Hasamdo

